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II . 제안사유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본예산(A)	2018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모		9,343,217	9,151,267	191,950	2.1%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373,353	5,225,012	148,341	2.8%
	자치단체이전수입	3,170,444	3,100,278	70,166	2.3%
	기타이전수입	6,695	22,126	△15,431	△69.7%
	자체수입	142,725	163,639	△20,914	△12.8%
	지방교육채	0	133,440	△133,440	△100.0%
	전년도이월금	650,000	506,772	143,228	28.3%
세 출	인건비	5,607,911	5,486,408	121,503	2.2%
	기관운영비	33,513	43,234	△9,721	△22.5%
	학교운영비	815,272	805,208	10,064	1.2%
	교육사업비	1,945,019	1,949,224	△4,205	△0.2%
	시설사업비	727,080	712,890	14,190	2.0%
	지방교육채 및 BTL	196,852	143,523	53,329	37.2%
	예비비	17,570	10,780	6,790	63.0%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9년		2018년		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이 전 수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373,353	57.5%	5,225,012	57.1%	148,341	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70,444	33.9%	3,100,278	33.9%	70,166	2.3%
	기 타 이 전 수 입	6,695	0.1%	22,126	0.2%	△15,431	△69.7%
	소 계	8,550,492	91.5%	8,347,416	91.2%	203,076	2.4%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06	1.1%	112,554	1.2%	△10,648	△9.5%
	행 정 활 동 수 입	5,498	0.1%	5,453	0.1%	45	0.8%
	자 산 수 입	7,990	0.1%	26,418	0.3%	△18,428	△69.8%
	이 자 수 입	7,008	0.1%	4,108	0.0%	2,900	70.6%
	금 용 자 산 회 수	0	0.0%	0	0.0%	0	0.0%
	기 타 수 입	20,323	0.2%	15,106	0.2%	5,217	34.5%
	소 계	142,725	1.5%	163,639	1.8%	△20,914	△12.8%
차 입	지 방 교 육 채	0	0.0%	133,440	1.5%	△133,440	△100.0%
기 타	전 년 도 이 월 금	650,000	7.0%	506,772	5.5%	143,228	28.3%
합	계	9,343,217	100.0%	9,151,267	100.0%	191,950	2.1%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인 건 비	5,607,911	60.0%	5,486,408	60.0%	121,503	2.2%
기 관 운 영 비	33,513	0.4%	43,234	0.5%	△9,721	△22.5%
학 교 운 영 비	815,272	8.7%	805,208	8.8%	10,064	1.2%
교 육 사 업 비	1,945,019	20.8%	1,949,224	21.3%	△4,205	△0.2%
시 설 사 업 비	727,080	7.8%	712,890	7.8%	14,190	2.0%
지 방 채 및 B T L 상 환	196,852	2.1%	143,523	1.6%	53,329	37.2%
예 비 비 및 기 타	17,570	0.2%	10,780	0.1%	6,790	63.0%
합 계	9,343,217	100.0%	9,151,267	100.0%	191,950	2.1%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3,432억 1천 7백만원으로, 2018년도 본 예산 9조 1,512억 6천 7백만원 보다 1,919억 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액	7,690,091	8,001,287	8,147,725	9,151,267	9,343,217
전년대비 증감액	250,962	311,196	146,438	1,003,542	191,950
증 감 율	3.4	4.0	1.8	12.3	2.1

- 금번 예산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38%에 못 미치는 2.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¹⁾ 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른 중앙정부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018년도 보다 1,644억 6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도 전년도 보다 95억 2천 7백만원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2억 2천 8백만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은 254억 2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66억 4천 3백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06억 4천 8백만원. 자산수입은 184억 2천 8백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1,334억 4천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둔화되었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2] 2017~2019년 자원 의존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자원	7,403,238	90.9	8,347,416	91.2	8,550,492	91.5
자체자원	473,971	5.8	670,411	7.3	792,725	8.5
지방교육채	270,516	3.3	133,440	1.5	-	-
계	8,147,725	100.0	9,151,267	100.0	9,343,217	100.0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의 자원 의존도는 자체자원의 증가와 지방교육채 미발행에도 불구하고 의존자원 규모가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음.

[표3] 2017~2019년 자체자원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122,642	25.9	112,554	16.8	101,906	12.9
사용료 및 수수료	5,176	1.1	5,453	0.8	5,498	0.7
자산수입	13,718	2.9	26,418	3.9	7,990	1.0
이자수입	4,066	0.9	4,108	0.6	7,008	0.9
순세계잉여금	311,864	65.8	506,772	75.6	650,000	82.0
기타수입	16,505	3.5	15,106	2.3	20,323	2.6
계	473,971	100.0	670,411	100.0	792,725	100.0

- 다만 자체자원 증가와 관련해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수업료, 입학금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도 보다 106억 4천 8백만원 감소하였고, 자산수입도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등의 매각 규모가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184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1,432억 2천 8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자체자원 비율이 소폭 증가하게 되었음.

자체재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²⁾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³⁾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상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결산으로 확정되며 다음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육청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결산 이전에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결산 이전에 이를 추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의 계획적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본예산에는 최소 3년간의 평균적 규모를 반영하고 결산 후 확정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

2)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3)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4)

- 이와 같이 비록 금번 예산안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통해 자체 재원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재원 의존도는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5)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자칫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교육청은 적정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입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임.6)

4) 보다 자세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41p 다. 전년도이월금’ 참고.

5)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상(3p)의 재정자주도(순세계잉여금 제외)는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음.

6)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⑩ (생략)

[표3] 중기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51,194,723	10,094,430	9,861,951	10,025,754	10,375,634	10,836,955	1.8
교 특 회 계	51,061,015	10,043,915	9,778,758	10,025,754	10,375,634	10,836,955	1.9
기 금	133,708	50,515	83,194	0	0	0	△100.0

-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51조 1,947억 2천 3백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 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청사 이전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재정 계획 24p).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재정계획 24~28pp)

- 정부는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의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국세수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국세수입증가에 제약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국세수입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함.⁷⁾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국세수입호조세와 맞물려 일정기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7) 정부는 우리경제가 수출 소비 중심 성장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기획재정부, 2018.8. 12p. 참고).

○ 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상의 중기 이전수입 연평균 증가율 3.5%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중단으로 인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4]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47,895,955	9,251,688	9,149,565	9,435,007	9,806,694	10,253,001	2.6
중앙정부이전수입	29,919,040	5,812,364	5,636,544	5,870,744	6,132,836	6,466,552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213,199	5,207,203	5,611,101	5,845,521	6,107,865	6,441,509	5.5
보통교부금	28,244,243	5,029,654	5,425,610	5,652,279	5,905,950	6,230,750	5.5
특별교부금	968,956	177,549	185,491	193,242	201,915	210,759	4.4
국고보조금	126,640	25,960	25,443	25,223	24,971	25,043	△0.9
특별회계전입금	579,201	579,201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933,818	3,430,838	3,498,496	3,557,568	3,667,162	3,779,754	2.5
법정이전수입	16,303,402	3,121,567	3,184,201	3,232,181	3,330,445	3,435,008	2.4
시·도세전입금	6,697,276	1,267,922	1,292,673	1,325,043	1,377,885	1,433,753	3.1
담배소비세전입금	1,238,016	254,329	250,920	247,558	244,241	240,968	△1.3
지방교육세전입금	7,769,778	1,492,338	1,519,798	1,543,949	1,585,080	1,628,613	2.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426	6,059	13,256	731	380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22,213	89,246	96,269	103,846	112,018	120,834	7.9
교육급여보조금	55,694	11,674	11,285	11,054	10,840	10,840	△1.8
비법정전입금	1,630,416	309,270	314,295	325,387	336,718	344,746	2.8
기타(민간)이전수입	43,097	8,487	14,525	6,695	6,695	6,695	△5.8

- 특히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2.8%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이전 수입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임.

[표5] 2019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⁸⁾ 기관별 전망(2018.10 기준)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18년(p)	2019년(p)
정부	2018년7월18일	2.90%	2.80%
한국은행	2018년7월12일	2.90%	2.80%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10월10일	2.70%	2.70%
KDI	2018년5월31일	2.90%	2.70%
IMF	2018년10월9일	2.80%	2.60%
OECD	2018년9월20일	2.70%	2.80%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9월30일	2.80%	2.60%
LG경제연구원	2018년9월20일	2.80%	2.50%
평 균		2.81%	2.69%

- 물론 정부가 전망한 실질성장률 2.8%는 국내 일부 경제 전문기관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부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역할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상을 비롯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불안,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내국세 감소의 부담요인이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재정계획 29~33pp)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와 지방교육채상환 등의 보전지출 증가로 인해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지출의 경우 학령인구수의 감소 등에 따라 연평균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8%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6]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51,194,723	10,094,430	9,861,951	10,025,754	10,375,634	10,836,955	1.8
교육비특별회계	51,061,015	10,043,915	9,778,758	10,025,754	10,375,634	10,836,955	1.9
경 상 지 출	35,148,152	6,687,892	6,842,961	7,007,578	7,224,579	7,385,142	2.5
사 업 비	15,842,863	3,336,023	2,930,796	3,013,176	3,131,055	3,431,812	0.7
예 비 비	70,000	20,000	5,000	5,000	20,000	20,000	0.0
기 금	133,708	50,515	83,194	0	0	0	△100.0
기금경상지출	0	0	0	0	0	0	0
기금사업비	133,708	50,515	83,194	0	0	0	△100.0

- 다만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은⁹⁾ 공무원 등 인건비와 같은 경상지출 증가와는 달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누리과정교육·보육비의 감소로(연평균 -4.1%) 인 해 [표7]과 같이 매년 2.1%규모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총 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의 증가는 결국 재량지출 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사료됨.

9)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표7]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51,061,015	10,043,915	9,778,758	10,025,754	10,375,634	10,836,955	1.9
의 무 지 출	41,684,665	8,002,983	8,099,239	8,317,092	8,572,613	8,692,737	2.1
재 량 지 출	9,376,350	2,040,932	1,679,518	1,708,662	1,803,020	2,144,218	1.2

-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지출 증가분만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 (이하 '2019 성과계획안'이라 함)을 제출하였음.¹⁰⁾

1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금번 2019 성과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20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95개 단위과제(성과지표수 87개)로 계획되었고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8%인 2조 6,440억 8천 8백만원으로 2018년도 보다 381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¹¹⁾
- 2019 성과계획안은 모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정량(계량)지표로 설정하면서 4개의 투입지표, 8개의 과정지표, 35개의 산출지표, 40개의 결과지표로 세분화하고 있음. 다만 각 성과지표가 세부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적절한 측정산식을 도입하였는지, 예산안과 연계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등이 의문임.
- 먼저 ‘1-2. 교실혁명’의 ‘③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 성과지표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21개 발명교육센터에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축정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2019 성과계획안에서는 21개 발명교육센터 중 최소 13개 곳(구축률 60%)에 구축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였음.

그러나 교육혁신과가 제출한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8.10.17.) 2018년도에 13개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 완료 예정에 있어 이미 60% 구축률을 달성한 상황이고, 예산안에는 자체재원으로 2개, 서울시전입금으로 8개 등 총 10개의(사업별 설명자료 578~580pp)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음.

이를 종합해 보면 2018년에 구축한 13개와 금번 예산안의 10개를 합하면 21개 모든 발명교육센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완료 됨.¹²⁾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12) 초과물량 2개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센터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함.

[표8]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운영 현황(2018.10 기준)

순	지역청	자치구	지정 센터	순	지역청	자치구	지정 센터
1	강남서초	강남구	서울논현초등학교	8	성동광진	성동구	성수중학교
2	강동송파	송파구	아주중학교	9	성북강북	성북구	서울돈암초등학교
3	강서양천	양천구	서울계남초등학교	10	서부	마포구	아현중학교
4	남부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	11	중부	용산구	서울한남초등학교
5	동부	종량구	동부교육지원청	12	본청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6	동작관악	관악구	인현중학교	13	직속기관	관악구	서울과학전시관
7	북부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				

성과계획의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안과 연계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번 2019 성과계획안의 ‘③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은 예산안의 사업물량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안과 같이 모든 발명교육센터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될 예정이라면 목표치가 60%가 아닌 100%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성과지표 성격과 관련해서¹³⁾ 2019 성과계획안에서는 ‘I-1②유치원컨설팅장학 만족도’ 등의 17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만족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1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그러나 각 사업들의 만족도 측정이 전체 응답자 중 만족 이상 응답수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17개 사업 중 ‘I-3④초등 5,6학년까지 수영교육 만족도’, ‘II-3①초등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IV-3①교육대상자 설문 만족도’, ‘V-2②학부모 교육 만족도’, ‘V-4④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등의 5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로, ‘IV-2②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의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로, 나머지 11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혼용하여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2019 성과계획안 191~197pp).

이러한 문제는 참여율 성과지표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I-2⑥ 학교독서동아리 참여율’, ‘I-3①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성과발표회 참여율’, ‘I-4①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 비율’, ‘II-1①사립유치원 재정업무연수 참여율’, ‘II-3②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III-2②유초중고 특수학교 관리자 연수 참여율’, ‘IV-2⑦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V-3①학업복귀 프로그램 참여 비율’ 등의 경우 전체 학교수 중 참여한 학교수와 같이 참여정도를 수치화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정산식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혼용되고 있음(2019 성과계획안 191~197pp).

- 이와 같이 교육청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과정, 투입, 산출, 결과지표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대한 구분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는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매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8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두거나, 성과지표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¹⁴⁾ 수년간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5p 참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청은 성과계획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를 비롯해 과거 특정정책추진 시 개발되었던 성과지표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지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Pool'을 개발·운영하는 등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최소한 훈령, 예규 등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그 밖에 'I-3②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V-1⑤교육공무원 신규 채용자 직무연수 만족도', 'V-4⑤노사관계 외부위탁교육 만족도'의 성과지표의 경우는 '점수'를 '%'로 표시하는 등 성과목표치 단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오류도 확인되는바, 성과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
-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15)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

15)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

[표9]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0개	176,596,297	157,933,213	18,663,084	11.8%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1개	96,068,876	78,298,034	17,770,842	22.7%
2. 성별영향평가사업*	5개	27,482,268	25,073,322	2,408,946	9.6%
3. 교육부지정사업	12개	52,385,829	53,847,305	△1,461,476	△2.7%
4. 자체선정사업**	2개	659,324	714,552	△55,228	△7.7%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30개 사업에 2018년 보다 186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1,765억 9천 6백만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¹⁶⁾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¹⁷⁾ 따라 선정된 사업, 그리고 교육부 장

16)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오디세이학교운영(성인지 예산안 73p)과 주민참여예산운영(성인지 예산안 142p)에 불과함.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안은 여전히 자체사업 수가 적은 실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가령 주민참여예산운영과 같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성비를 균등하게 하는 것 등이 하나의 예일 수 있음.

[표10]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사업 분류	2019년 예산안(A)	2018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중등교원연수지원	1	1,851,770	1,849,943	1,827	0.1
교장및기관장임용	1	78,300	72,200	6,100	8.4
인사관리	1	1,004,982	701,814	303,168	43.2
인사일반운영	1	772,591	435,445	337,146	77.4
교원노사관리	3	232,916	239,916	△7,000	△2.9
오디세이학교운영	4	571,934	589,392	△17,458	△3.0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	79,130	87,520	△8,390	△9.6
중등수석교사제운영	3	737,926	791,782	△53,856	△6.8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1	2,555,767	2,300,272	255,495	11.1
방과후활동지원	1	4,426,150	4,381,000	45,150	1.0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	13,287,120	13,010,000	277,120	2.1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	31,400	30,000	1,400	4.7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3	8,967,658	9,909,835	△942,177	△9.5
영어체험교육지원	3	1,264,216	1,286,182	△21,966	△1.7
마이스터고지원	3	4,100,000	4,100,000	0	0.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교육성	1	800,000	600,000	200,000	33.3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2	10,194,524	8,205,812	1,988,730	24.2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2	10,060,940	10,033,972	26,968	0.3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명	사업 분류	2019년 예산안(A)	2018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선진운동부육성	2	1,010,200	1,040,200	0	0.0
문화예술지원	3	5,547,419	5,743,630	△196,211	△3.4
청소년단체활동지원	3	52,950	97,500	△44,550	△45.7
학교안전망구축	2	1,247,696	1,303,098	△55,402	△4.3
맞춤식진로교육	2	4,938,890	4,490,240	448,650	10.0
초등돌봄교실운영	1	70,896,296	54,552,860	16,343,436	30.0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	30,907,826	31,042,520	△134,694	△0.4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3	167,010	160,770	6,240	3.9
독서문화맞춤교육지원사업	3	307,930	334,130	△26,200	△7.8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	364,500	364,500	0	0.0
주민참여예산운영	4	87,390	125,160	△37,770	△30.2
학교운영위원회	3	20,848	53,520	△32,672	△61.0
계		176,596,297	157,933,213	18,663,084	11.8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 위함인 바,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성인지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방과후활동지원의 경우(성인지 예산안 85p) 사업대상자 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참여율은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성인지 예산안에서는 여학생 사업대상자 수가 남성보다 적다는 점을 근거로 여학생 참여율 향상이 필요하다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성평등정책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업대상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방과후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인바, 남학생의 방과후활동 참여율이 향상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청은 단순히 성별 참여율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인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각 성별 참여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균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의 경우에도(성인지 예산안 91p)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 수에서 여성교원이 남성교원보다 많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참여율에 있어서도 남성교원이 여성교원 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양성평등정책추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남성교원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합치되는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남성교원의 참여율이 향상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의 경우도(성인지 예산안 94p) 사업대상자가 절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안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근거로 남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 보다 높은 점을 들어 동 사업이 교육서비스 분야의 여성 인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교육분야의¹⁸⁾ 여성취업률은 남성의 2배 이상인바(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성별 현황 역시도 여성이 더 많음¹⁹⁾),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이 이미 성비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영역에서는 특정 성별의 독점현상을 유지·촉진시키는 것이 양성평등 관점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²⁰⁾

18)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에는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교습학원,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있음.
 19) 교육청 지방공무원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원	남성		여성		5급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지방공무원	정규직	6,398	2,875	45	3,523	55	212	60	143	40
	비정규직(임기제)	46	21	46	25	54	7	78	2	22
계	6,444	2,896		3,548		219		145		

20) 문화예술지원(성인지 예산안 115p)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

[표11] 경제활동 인구조사 교육분야 성별 취업 현황²¹⁾

(단위: 천명)

성별 \ 년월	2018. 07	2018. 08	2018. 09
계	1,857	1,860	1,858
남자	588	598	601
여자	1,269	1,262	1,256
남자비율(%)	31.7	32.2	32.3
여자비율(%)	68.3	67.8	67.6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 기관이 선정한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교육분야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선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성과 목표나 성과지표의 수정·보완 사항을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²²⁾

가. 이전수입

-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33~48pp, 사업별 설명자료 5~15pp)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7,729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39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12] 지방재정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자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자원	목적지정
보 통 교 부 금	4,684,808	4,520,346	164,462	3.6	4,684,808	0
특 별 교 부 금	88,117	78,590	9,527	12.1	0	88,117
계	4,772,925	4,598,936	173,989	3.8	4,684,808	88,117

2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고.

22)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는 [붙임1] 참고.

①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²³⁾ 따라 정부(교육부)가 “내국세 20.27%의 97% 및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인바,²⁴⁾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18년도 보다 1,644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4조 6,848억 8백만이 편성되었음.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은 ①교직원인건비, ②학교·교육과정운영비, ③교육행정비, ④교육복지지원비, ⑤학교시설비, ⑥유아교육비, ⑦방과후학교사업비, ⑧재정결함보전, ⑨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⑩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⑪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⑫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⑬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⑭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원, ⑮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지원 등으로 구분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4)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 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으로 산정되고 있음.²⁵⁾

[표13]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본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2])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 수 등	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통폐합 학교, 학생 수
2.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 수 등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3. 교육행정비	학교, 학생 수 등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
4.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급자 수 등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5. 학교시설비	노후 건축연면적 등	5. 중등 직업교육학생 비중 확대 지원	학교 수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원, 유치원 수 등		
7.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급, 수급자 수		
8. 재정결함보전	원리금 상환액, BTL임대료		

-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50.1%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이 2018년도 보다 948억 4천만원 증가하였는바, 교직원인건비 호봉승급분 반영, 학교환경개선비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음.

25)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A×B)×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2] 참고.

[표14]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내역²⁶⁾

(단위: 백만원)

구 분	측정항목	2019년 예정교부액	2018년 예정교부액	전년대비 증감액
보통교부금(A-B+C+D)		4,684,808	4,520,346	164,462
기 준 재 정 수 요 액 (A)	합계	8,982,290	8,657,563	324,727
	1. 교직원인건비	6,036,597	5,793,469	243,128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598,232	1,588,759	9,473
	3. 교육행정비	108,621	141,070	△32,449
	4. 교육복지지원비	214,984	194,208	20,776
	5. 학교시설비	691,959	538,543	153,416
	6. 유아교육비	70,148	61,709	8,439
	7. 방과후학교사업비	86,699	111,506	△24,807
	8. 재정결함보전	127,929	195,164	△67,235
*자체노력수요	47,121	33,135	13,986	
기 준 재 정 수 입 액 (B)	합계	4,302,415	4,207,575	94,840
	1. 법정전입금	3,936,969	3,815,635	121,334
	2. 수업료및입학금	266,898	294,173	△27,275
	3. 학교용지부담금	9,302	10,614	△1,31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9,246	87,153	2,093
정정교부액(C)		4,933	70,358	△65,425
지방채(D)		0	0	0

②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 등 115개 사업에 881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18년도 785억 8천 9백만원 보다 95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²⁷⁾ 따라 그동안 일방

2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974(2018.9.28.) 참고.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정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

적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 추진으로 인해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²⁸⁾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특별교부금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청은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여 왔음.²⁹⁾

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표15] 2015~2018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예산액)	154,974	100	155,544	100	204,291	100	144,953	106
교부합계	154,974	100	155,544	100	204,291	100	153,201	100
국가시책사업	102,512	66.1	105,151	67.6	146,696	71.8	102,361	66.9
지역교육현안수요	45,997	29.7	49,159	31.6	49,106	24	35,613	23.2
재해대책수요	6,465	4.2	1,234	0.8	8,489	4.2	15,227	9.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고 있는바,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국 고 보 조 금	24,529	24,757	△228	△0.9	0	24,529

29)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의 금액 중 3%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칙 제9조).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18년도 보다 2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245억 2천 9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6] 국고보조금 편성사업(사업별 설명자료 13p)

(단위: 천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업명	2019 예산편성액
1	참여협력담당관	국고보조금	교육급여지원	17,511,423
2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	358,937
3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013,659
4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학교흡연예방교육	4,645,474
합 계				24,529,493

- 국고보조금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서 금번 예산안에는 교육급여지원(175억 1천 1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3억 8천 9백만원), 초등스포츠강사지원(20억 1천 4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46억 4천 5백만원)의 4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이중 교육급여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전입되는 세입재원인바, 금번 예산안에는 2018년도의 180억원보다 4억 8천 9백만원이 감소된 17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³⁰⁾

교육급여지원의 국고보조금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라 하겠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는 교육급여 재원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교육급여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1%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9%를 부담하도록 편성되었음.³¹⁾

30) 교육청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 현황과 지원 사업 내역은 [붙임3] 참고.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17]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사업별 설명자료 395p)

(단위: 백만원, %)

분담주체	재원분담					
	2017		2018		2019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중앙정부 (교육급여보조금)	19,625	37.1	18,000	39.6	17,511	42.6
지방자치단체 (교육급여보조금)	13,083	24.8	12,000	26.4	11,674	28.4
소 계	32,708	62	30,000	66	29,186	71
교육청	20,138	38.1	15,398	34	11,915	29
총 계	52,846	100	45,397	100	41,101	100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결산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약 24.5%인 129억 5천 9백만원 발생하였고 2018년의 경우도(10월 기준) 현재 66억 9천 8백만원이 불용상태라는 점에서 매년 수급 대상자 산출기초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³²⁾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32)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2018.3.23., 교육부) 참고.

따라서 교육청은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산출 시스템의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다)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특별회계전입금	575,899	601,319	△25,420	△0.04	-	575,899

-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54억 2천백만원이 감소한 5,758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중앙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분담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누리과정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였음.
-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³³⁾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 시적인 재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교육부,

[급여의 지급]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하고, 그 외의 학비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용 계좌에 입금됨.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 분기에 재학여부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교과서대, 교재비, 학용품비는 해당 지급 학기의 학비를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함.

3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청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의 ‘무상교육’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어다는 점에서³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을 국고(교육부·보건복지부)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 종료로 인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재원분담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³⁵⁾

[표18] 유아교육특별회계 종료에 따른 예상 가능 대안

구분		① 특별회계 연장	② 특별회계 종료	
			②-1 재원 분리형	②-2 재원 통합형
내 용	유치원	유아교육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국고 지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 한편 이와 같은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소관부처 및 법령의 이원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⁶⁾

3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8] 2016~2019 누리과정 편성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어린이집	3세	44,861	153,653	41,880	142,971	41,409	144,480	39,985	139,148
	4세	32,837	114,063	31,863	110,883	31,509	109,651	31,178	108,499
	5세	28,604	96,745	28,408	98,860	32,590	113,413	29,470	102,556
소계	106,302	364,461	102,151	352,714	105,508	367,544	100,633	350,203	
유치원	3세	24,292	66,127	22,910	63,294	22,942	63,315	22,661	62,642
	4세	31,898	87,295	30,967	87,053	30,040	81,841	30,230	81,790
	5세	33,726	90,299	33,517	88,432	33,891	90,798	30,946	81,264
소계	89,916	243,720	87,394	238,779	86,873	235,954	83,837	225,696	
총계	196,218	608,182	189,545	591,492	192,381	603,498	184,470	575,899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49~64pp, 사업별 설명자료 16~20pp)

[표19] 2015~2018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광역	2,586,230	2,910,709	3,096,678	3,166,942
기초	3,398	3,925	3,600	3,502
합계	2,589,628	2,914,634	3,100,278	3,170,444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8년도 보다 70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3조 1,704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6) 유아교육·보육 통합은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이 명확한 결론 없이 운영기한 만료로 해산되었음.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에 이어 의제를 주관하게 된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

가)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시 도 세	1,267,922	1,230,170	37,752	3.1%	1,267,922	0
담 배 소 비 세	254,329	280,972	△26,643	△9.5%	254,329	0
지 방 교 육 세	1,492,337	1,458,184	34,153	2.3%	1,492,337	0
학 부 교 담 용 지 민	6,059	9,056	△2,997	△33.1%	6,059	0
지 방 교 육 재 전 민	89,246	87,153	2,093	2.4%	89,246	0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1,674	12,000	△326	△2.7%	0	11,674
계	3,121,567	3,077,535	44,032	1.4%	3,109,893	11,674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18년도 보다 440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3조 1,215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³⁷⁾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세입재원으로 2018년도 보다 341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조 4,923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2018년도 보다 377억 5천 2백만원 증가한 1조 2,679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266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한 2,543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³⁸⁾

나)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광역자치단체	48,877	22,743	26,134	114.9%	4,177	44,700
기초자치단체	0	0	0	0%	0	0
소계	48,877	22,743	26,134	114.9%	4,177	44,700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³⁹⁾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⁴⁰⁾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 6개 세목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 (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38)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40)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보다 261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488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도서관운영비 41억 7천 7백만원을 제외한 447억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보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서 지난 10월 29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1개 사업 중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및 ‘특별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상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경비 지원 총액 533억원 중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447억원을 제외한 상기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86억원은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⁴¹⁾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⁴²⁾

-
-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2) 「2019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평생교육국 예산에는(863p) 21개 사업에 대한 전출금으로 53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물론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나 특별교육지원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상 사업대상(학교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으로 인해 사업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재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킬 수 없다는 한계도 있으나, 43)

이러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함으로써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등을 통해 법령이 정한 예산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20] 2017~2019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안	2018년 대비증감	2018년 증감률
계	56,677	28,268	53,300	25,032	88.6
일반교육지원사업	51,009	25,706	50,550	24,844	96.6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10,435	7,744	7,139	-605	△7.8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356	5,265	5,239	-26	△0.5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1,300	-479	△26.9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1,100	600	600	0	0.0
4. 자전거안전교육 지원	200	-	-	0	
5. 혁신교육지구 지원	1,800	-	-	0	
6.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200	100	-	-100	△100.0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	40,574	17,962	43,411	25,449	141.7
7.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10,000	5,000	5,000	0	0.0
8. 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	-	0	
9.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0	-	-	0	
10.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400	400	-	-400	△100.0
11.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420	-	-	0	
12.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200	1,500	2,000	500	33.3
13. 유아교육 지원	820	975	975	0	0.0
14.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0	
1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444	1,512	1,512	0	0.0
16.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080	-	-	0	
17. 학교 평생교육 지원	735	-	-	0	
17.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420	-	1,100	1,100	
20. 학교생태정원가꾸기	1,000	-	-	0	
21. 학력인정문제교육프로그램지원	782	-	-	0	

43)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2019년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안	2018년 대비증감	2018년 증감률
22.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750	750	1,500	750	100.0
23. 문화예술특별교실 설치	1,908	-	1,080	1,080	
24.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700	0	0.0
25.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500	3,500	0	0.0
26. 이재민수용시설학교내진보강	1,980	-	-	0	
27. 학교CCTV교체	1,535	1,535	1,535	0	0.0
28.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	200	-	-	0	
29. 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	200	-	-	0	
30.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	840	-	-840	△100.0
31. 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운영	-	1,000	1,000	0	0.0
32.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	250	1,500	1,250	500.0
33. 학교 체육관 건립			14,900	14,900	
34.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지원			3,000	3,000	
35.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및 드론교육원 조성			1,900	1,900	
36.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59	1,359	
37.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850	850	
특별교육지원사업	5,668	2,562	2,750	188	7.3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65~70pp, 사업별 설명자료 21~22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6,695	22,126	△15,431	△69.7	1,950	4,745

- 금번 민간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금(47억 4천 5백만원)과 교육금고(농협) 협력사업비(19억 5천만원)을 합한 총 66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44)

44)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은 [붙임4] 참고.

나. 자체수입(예산안 71~125pp, 사업별 설명자료 23~45pp)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목				
합계		142,724,577	163,638,836	△20,914,259	△12.8%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05,972	112,553,646	△10,647,674	△9.5%
	기본적교육수입	99,494,298	110,026,726	△10,532,428	△9.6%
	입학금	58,028	60,632	△2,604	△4.3%
	수업료	98,671,468	109,198,554	△10,527,086	△9.6%
	지난년도수업료	764,802	767,540	△2,738	△0.4%
	선택적교육수입	2,411,674	2,526,920	△115,246	△4.6%
	기숙사및급식	801,904	888,400	△86,496	△9.7%
	평생학습수입	1,609,770	1,638,520	△28,750	△1.8%
행정활동수입		5,498,245	5,453,099	45,146	0.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498,245	5,453,099	45,146	0.8%
	사용료수입	4,624,138	4,644,282	△20,144	△0.4%
	수수료수입	874,107	808,817	65,290	8.1%
자산수입		7,989,331	26,417,910	△18,428,579	△69.8%
	자산임대수입	431,068	474,577	△43,509	△9.2%
	임대료수입	431,068	474,577	△43,509	△9.2%
	자산매각대	7,558,263	25,943,333	△18,385,070	△70.9%
	토지매각	7,526,520	25,935,302	△18,408,782	△71.0%
	기타유형자산매각	23,465	1,450	22,015	1,518.3%
	무형자산매각	8,278	6,581	1,697	25.8%
이자수입		7,008,066	4,108,476	2,899,590	70.6%
	이자수입	7,008,066	4,108,476	2,899,590	70.6%
	이자수입	7,008,066	4,108,476	2,899,590	70.6%
기타수입		20,322,963	15,105,705	5,217,258	34.5%
	제재금수입	786,445	540,878	245,567	45.4%
	변상금	202,570	204,035	△1,465	△0.7%
	위약금	148,587	21,985	126,602	575.9%
	연체료	125,288	125,858	△570	△0.5%
	과태료	310,000	189,000	121,000	64.0%
	기타수입	18,975,173	13,492,827	5,482,346	40.6%
	생산물매각대	1,500	1,500	0	0.0%
	그외수입	18,973,673	13,491,327	5,482,346	40.6%
	과년도수입	561,345	1,072,000	△510,655	△47.6%
	과년도수입	561,345	1,072,000	△510,655	△47.6%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18년 보다 209억 1천 4백만원이 감소한 1,427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기본적교육수입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입학금 면제)와⁴⁵⁾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업료 등의 감소로 인해 2018년 보다 105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한 994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선택적교육수입은 기숙사및급식 수입이 전년도 보다 8천 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평생학습수입도 전년도 보다 2천 9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1억 1천 5백만원 감소한 24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2018년 보다 4천 5백만원 증가한 54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임대수입은 4억 3천 1백만원, 자산매각대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중 토지의 매각 물량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184억 8백만원이 감소한 75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그 밖에 이자수입은 70억 8백만원이며 변상금, 위약금 등의 제재금수입은 7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산물매각대 등의 기타수입은 189억 7천 5백만원을,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의 과년도 수입은 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5% 규모로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무상교육의 실시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4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의존재원 구조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체수입 증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 등으로 인한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신속한 부과로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전년도이월금(예산안 135~153pp, 사업별 설명자료 51~53pp)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650,000,000	506,772,158	143,227,842	28.3%
전년도이월금		650,000,000	506,772,158	143,227,842	28.3%
	순세계잉여금	650,000,000	506,772,158	143,227,842	28.3%
	순세계잉여금	650,000,000	506,772,158	143,227,842	28.3%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6,500억원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1,432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⁴⁶⁾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4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의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21] 2015~2019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본예산	-	187,428	311,863	506,772	650,000
추경예산	125,696	319,104	505,442	515,188	

- 이러한 점에서 [표21]에 나타난 교육청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3,353억 5천 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8조 2,485억 9천 3백만원 대비 약 4.1%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9조 3,432억 1천 7백만원 대비 약 7.0% 규모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3년간 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임. 다만 금번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서⁴⁷⁾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4,012억 5천 4백만원)이 추가로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수년간의 본예산 편성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것이 지양되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전망상(예산안 1973p) 징수전망액에서 지출 추정액을 감한 금액 전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바, 만일에 징수전망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적을 경우 또는 지출 추정액 보다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8년

47) 2018.9.14 본회의 의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감소하게 되어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추정치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449,289	47.6%	4,371,215	78,074	1.8%	4,449,289	0	
	사립학교인건비	1,158,622	12.4%	1,115,193	43,429	3.9%	1,158,622	0	
	계	5,607,911	60.0%	5,486,408	121,503	2.2%	5,607,911	0	
경상비	기관운영비	33,513	0.4%	43,234	△9,721	△22.5%	33,513	0	
	학교인건비	공립	744,311	8.0%	737,763	6,548	0.9%	744,311	0
		사립	70,961	0.8%	67,445	3,516	5.2%	70,961	0
		소계	815,272	8.7%	805,208	10,064	1.2%	815,272	0
	계	848,785	9.1%	848,442	343	0.04%	848,785	0	
사업비	교육사업비	1,945,019	20.8%	1,949,224	△4,205	△0.2%	1,215,255	729,764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132,439	1.4%	161,075	△28,636	△17.8%	132,439	0
		일반시설	514,421	5.5%	474,441	39,980	8.4%	494,521	19,900
		급식시설	80,220	0.9%	77,374	2,846	3.7%	80,220	0
		소계	727,080	7.8%	712,890	14,190	2.0%	707,180	19,900
계	2,672,099	28.6%	2,662,114	9,985	0.4%	1,922,435	749,664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상환 등	92,465	1.0%	39,017	53,448	137.0%	92,465	0	
	BTL상환	104,387	1.1%	104,506	△119	△0.1%	104,387	0	
	계	196,852	2.1%	143,523	53,329	37.2%	196,852	0	
예비비 및 기타	17,570	0.2%	10,780	6,790	63.0%	17,570	0		
합계	9,343,217	100.0%	9,151,267	191,950	2.1%	8,593,553	749,664		

-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보다 1,919억 5천만원이 증가한 9조 3,432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는 전년대비 1,215억 3백만원이 증가한 5조 6,07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는 3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8,487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각각 1조 9,450억 1천 9백만원과 7,27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BTL 상환은 1,043억

8천 7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은 924억 6천 5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1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22] 2017~2019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성질별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추경까지	2019년 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305,334	4,522,362	4,449,289
		사립학교인건비	1,060,405	1,120,833	1,158,622
		계	5,365,739	5,643,195	5,607,911
	기관운영비	40,877	43,243	33,513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683,499	746,756	744,311
		사립학교운영비	62,615	67,445	70,961
		계	746,114	814,201	815,272
	복지사업비	1,335,850	1,383,369	1,269,263	
	지방교육채 및 BTL	683,688	431,001	196,852	
	계	8,172,267	8,315,009	7,922,811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무기직제외)		658,686	727,015	675,756
	시설비	급식시설	68,051	89,102	80,220
		일반시설	584,938	532,713	514,421
		학교신증설	104,665	210,891	132,439
		계	757,654	832,706	727,080
	예비비	7,730	10,780	17,570	
계	1,424,070	1,570,501	1,420,406		
총계		9,596,337	9,885,510	9,343,217	

-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복지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약 85%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 하겠음.

[표23] 2015~2018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15	7,690,091	381,357	1,289,336	29.6
2016	8,001,287	495,781	1,014,154	48.9
2017	8,147,725	451,458	1,383,571	32.6
2018	9,151,267	712,890	1,949,224	36.6
2019	9,343,217	727,080	1,945,019	37.4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8.6%인 2조 6,72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2억 5백만원이 감소한 1조 9,450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41억 9천만원이 증가한 7,27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시설사업비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사업비의 약 36.9%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등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비 비중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표24] 교육복지사업비 현황4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	적 자 원 운 용	27,933	1.4%	24,986	2,947	11.8%	27,869	64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500,494	25.7%	447,673	52,821	11.8%	401,068	99,426
교	육 복 지 지 원	1,269,263	65.3%	1,262,435	6,828	0.5%	653,656	615,607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28,864	1.5%	19,760	9,104	46.1%	21,602	7,262
평	생 교 육	27,430	1.4%	25,170	2,260	9.0%	26,034	1,396
직	업 교 육	702	0.0%	702	0	0.0%	702	0
교	육 행 정 일 반	90,333	4.6%	168,498	△78,165	△46.4%	84,324	6,009
합	계	1,945,019	100.0%	1,949,224	△4,205	△0.2%	1,215,255	729,764

○ 다만, 이와 같이 특정 사업영역의 편중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에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등 세출편중 현상의 심화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48) 보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붙임5] 교육사업비 구성 참고.

나. 2018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본예산	2018 추경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명시이월 예상액	2019년 예산안
교원임용관리	4,175	4,305	4,399	1,650	2,749	37.5	-	4,882
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62	402	402	170	232	42.3	-	521
본청시설관리	130	130	130	64	66	49.2	-	16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35	435	434	94	340	21.7	-	773
직속기관시설관리	9,404	10,677	11,087	4,711	6,376	42.5	1,000	14,217
학교급식환경개선	77,374	89,102	134,644	55,100	79,544	40.9	54,556	80,219
학교시설증개축	72,574	82,788	164,772	46,110	118,662	28.0	30,324	84,826
학교환경위생관리	4,689	13,400	15,468	5,723	9,745	37.0	230	13,053
계	169,143	201,239	331,336	113,622	217,714			198,657

○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2018년도 세출예산 중 10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인 교원임용관리,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본청시설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평균 37.4%로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보다 1,788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히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 등의 시설사업비의 집행률은 평균 34%로, 사업별 미집행액은 전체 미집행액 2,177억 1천 4백만원 대비 91%인 1,982억 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예산현액 대비 약 25%인 848억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⁴⁹⁾

○ 이와 같이 시설사업비의 경우 재원의 교부시기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증액 편성의 필요성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9) 실제로 금번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사업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된 사업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할 경우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불암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함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95p 참고).

다.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1)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에⁵⁰⁾ 따라 교육행정 각 분야의 정책수행에 있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참여토록 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는 사업임.⁵¹⁾

2) 예산안

[표25] 민간전문가 활용 현황⁵²⁾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2019년 인원	2019년 예산안(1)				2018년 예산(2)				증감액 (3=1-2)	사업별 설명자료
			수당	운영비	업무 추진비	합계	수당	운영비	업무 추진비	합계		
대변인	광고홍보민 간전문가 운영	1	18,250		1,000	19,250	10,400			10,400	8,850	(1권) 61
정책안전 기획관	민간전문가 및 특별보좌관 운영	5	101,250	4,130	1,200	106,580	19,680	1,920	400	22,000	84,580	(1권)213
	안전인프라 구축	1	5,180			5,180					5,180	(1권)281
	소계	6	106,430	4,130	1,200	111,760	19,680	1,920	400	22,000	89,760	
노사협력 담당관	민간전문가 (노동정책 자문관) 위촉 운영	1	20,500			20,500	19,680			19,680	820	(1권)528

5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51) 동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2018년에는 광고 운영비에서 홍보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52)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임.

단 위 부 서	사업명	2019년 인원	2019년 예산안(1)				2018년 예산(2)				증감액 (3=1-2)	사업별 설명자료
			수당	운영비	업무 추진비	합계	수당	운영비	업무 추진비	합계		
참 여 학 원 단 위 단 위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1	14,982			14,982	3,122	2,497		5,619	9,363	(1권) 438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1	24,000			24,000	3,121			3,121	20,879	(1권) 486
	소계	2	38,982			38,982	6,243			8,740	30,242	
교 육 학 생 신 과	교육정책사 업추진 외부전문가 자문	1	4,853			4,853	1,000			1,000	3,853	(1권) 740
초 등 교 육 과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1	9,000			9,000	3,500			3,500	5,500	(1권) 945
중 등 교 육 과	TEE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1	2,000	250	300	2,550	2,050	200	300	2,550		(1권)1091
민 주 시 민 교 육 과	참여형민주 시민교육지 원(민간전 문가운영)	1	6,000			6,000	6,000			6,000		(1권)1259
공 간 기 획 추 진 단	서울교육 민간전문가 운영(교육 공간, 색채디자인)	2	50,000		4,000	54,000	23,520			23,520	30,480	(2권) 2267
	청사이전사 업 추진	1	17,760		780	18,540	14,400			14,400	4,140	(2권) 2270
	소계	3	67,760		4,780	72,540	37,920			37,920		
진 로 직 업 교 육 과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1	15,000			15,000					15,000	(2권) 1671
계		18	288,775	4,380	7,280	300,435	106,473	2,120	700	111,790	154,025	

- 금번 예산안에는 광고홍보민간전문가 운영 등 18명의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2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오늘날 행정수요의 다원화·복잡화·전문화로 인해 각 행정기관들은 민간전문가의 행정활동 참여를 통한 행정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청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여 201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민간전문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
- 다만 민간전문가 위촉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하는 방식 이외에도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별 설명자료 280p)과 같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건축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⁵³⁾

또한 사업마다 ‘00전문가’, ‘00자문가’, ‘00자문관’, ‘00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의 사업명이 상이하고, 자문수당,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편성에 있어서도 용역비를 준용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자문수단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책안전기획관이 총괄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각 소관부서별 별도의 사업비로 자문수당 등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바, 그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53)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이러한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16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예술자문단(사업별 설명자료 665p), 꿈을담은놀이터 자문단(사업별 설명자료 942p)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자문단(사업별 설명자료 960p), 퇴직교원인생2모작 정책자문단(사업별 설명자료 1406p), 학교급식품질향상 자문단(2555p) 등 정책수행을 위한 수많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늘날 행정의 고도화·전문화·복잡·다기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로서 교육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영어교육 민간자문관과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관계와 같이 동일한 사업영역에 대한 중복적인 기능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민간전문가와 자문기구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감사관

가) 시민감사관운영과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사업별 설명자료 110p,116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⁵⁴⁾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공무원 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교육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② 예산안

㉠ 시민감사관운영(감사관 공익제보센터팀)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1,600	219,090	좌동	△7,490	좌동	
시민감사관 운영	184,800	183,840	좌동	960	좌동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9,000	18,000	좌동	△9,000	좌동	◦ 시민감사관 증원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감소
시민감사관 연수	10,900	10,600	좌동	300	좌동	
시민감사관 자료집 발간	6,900	6,650	좌동	250	좌동	

5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 담당자로 본다.

㉔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신규)(감사관 정책감사팀)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920	-	좌동	12,900	좌동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지원수당	5,000	-	좌동	5,000	좌동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	7,920	-	좌동	7,920	좌동	

- 금번 시민감사관운영은 시민감사관 증원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감소로 전년 보다 7백만원이 감소한 2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은 2018년 9월 13일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에 따라 1천 3백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㉔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 사업과 ‘㉕시민감사관 운영’ 사업을 보면(사업별 설명자료 111p와 117p), 두 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른 공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를 공익제보센터와 정책감사팀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따라서 외부전문가 수당을 사업별로 구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담당부서를 정책감사팀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제보센터는 시민감사관 운영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2) 기획조정실

가)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사업별 설명자료 334p, 337p)

① 사업 개요

-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부되는 예산중에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상적 경비로써 총액으로 교부되는 경비임. 현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에서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고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44,310,722	680,505,810	좌동	63,804,858	좌동	
학교기본운영비	617,088,766	583,328,473	좌동	33,760,239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수 증가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
학교기타운영비	127,221,956	97,177,337	좌동	30,044,619	좌동	

- 금번 학교기본운영비는 2018년 보다 337억 6천만원이 증가한 6,170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기타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300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272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연구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의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35억 1천 6백만이 증가한 709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26] 학교운영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비고
공립	744,311	737,763 (680,506)	6,548 ⁵⁵⁾	0.9%	○ 대상 : 1,208교 (유 236, 초 563, 중 274, 고 117, 특수 10, 각종 8) ○ 학교당직근무자 지원 4,733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3,824백만원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 △57,257백만원 - 2019년은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세부사업 변경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를 제외할 경우 예산 증감액 . ('18년) 680,506백만원 → ('19년)744,311백만원 . 63,805백만원 증가, 증가율 9.4%
사립	70,961	67,445	3,516	5.2%	○ 대상 : 127교 (중 108교, 특수 19교) ○ 학교당직근무자 지원 : 1,541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476백만원
합계	815,272	805,208	10,064	1.2%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이나 학급수, 학생수 등과 같은 학교의 기본적인 여건과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표27] 2018~2019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직접교육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기본 운영비 (a+b+c)	통합사업비 (직접교육비) (a)	교육공무직 인건비 (b)	학교자율 편성액 (c)	기본 운영비 (A+B+C)	통합사업비 (직접교육비) (A)	교육공무직 인건비 (B)	학교자율 편성액 (C)
공립	편성액	617,089	16,159	161,664	439,266	583,328	12,321	155,844	415,163
	편성율	100.0%	2.6%	26.2%	71.2%	100.0%	2.1%	26.7%	71.2%
사립	편성액	66,732	5,443	22,194	39,095	63,044	4,813	22,235	35,996
	편성율	100.0%	8.2%	33.3%	58.5%	100.0%	7.6%	35.3%	57.1%
합계	편성액	683,821	21,602	183,858	478,361	646,372	17,134	178,079	451,159
	편성율	100.0%	3.2%	26.9%	70.0%	100.0%	2.7%	27.6%	69.8%

- ※ 학교기본운영비=①공통경상운영비+②개별경상운영비(통합사업비, 통합인건비)
 - ☞ ①공통경상운영비 : 학교급별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따라 산정
 - ☞ ②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통합인건비의 경우, 사립은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
- ※ 직접교육비 규모 작성 자료 : 개별경상운영비 중 통합사업비(학교별 또는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교부되는 사업비) 규모로 작성함.
- ※ 교육공무직 인건비 : 공통경상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교육실무사 5개직종과 통합인건비로 지원되는 9개직종 인건비의 합임.

55) 증감규모가 사업별 설명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를 (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임.

- 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1,838억 5천 8백만원)가 26.9%를 차지하고 있고 직접교육비는(216억 2백만원) [표27]과 같이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동 경비의 재원구성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56)

나) 인건비(사업별 설명자료 354~358pp, 505p, 1947~1955pp)

① 사업 개요

-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존에 학교운영비(정원관리 대상 교육공무직 외)로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항목이 신설되어 이를 사업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급식종사자(조리종사원), 과학교육센터 업무보조원 등과 같이 사업성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음.

② 예산안

[표28]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비고	
공	교원 인건비 (42,494명)	보수	2,963,339	2,920,515	42,824	1.5%	○ 기본급 1.8% 인상 반영 ○ 정원 : 233명 감소
		법정부담금 등	649,793	677,141	△27,348	△4.0	○ 명예퇴직 인원 : 719명 ○ 퇴직수당부담금요율(3.4%→3.0%)
		소계	3,613,132	3,597,656	15,476	0.4%	
립	교육 전문직 인건비 (491명)	보수	42,304	42,231	73	0.2%	○ 기본급 1.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9,247	9,905	△658	△6.6%	○ 퇴직수당부담금요율(3.4%→3.0%)
		소계	51,551	52,136	△585	△1.1%	

56) 교육청은 학국교육개발원의 2005년, 2011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식으로 기본운영비를 산출하고 있음.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비 고	
지방 공무원 인건비 (6,689명)	보 수	382,244	370,531	11,713	3.2%	○ 기본급 1.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91,870	95,825	△3,955	△4.1%	○ 명예퇴직 인원: 70명 ○ 퇴직수당부담금요율(3.4%→3.0%)	
	소 계	474,114	466,356	7,758	1.7%		
공무원인건비(49,674명)		4,138,797	4,116,148	22,649	0.6%		
계약제 교원 인건비 (4,220명)	보 수	201,676	204,958	△3,282	△1.6%	○ 기본급 1.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39,211	40,557	△1,346	△3.3%		
	소 계	240,887	245,515	△4,628	△1.9%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722명)	보 수	11,410	2,151	9,259	430.5%	○ 2019년 생활임금 적용(1월 82,400원) ○ 행정기관 직고용 전환 인건비 등 통합 편성	
	법정부담금 등	14,799	431	14,368	3333.6%	○ 맞춤형복지비 통합편성(학교+행정기관직원)	
	처우개선비	37,938	3,223	34,715	1077.1%	○ 처우개선비 통합편성(학교+행정기관직원)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5,458	3,747	1,711	45.7%	○ 법정 의무고용률 상승	
	소 계	69,605	9,552	60,053	628.7%		
근로자인건비(4,942명)		310,492	255,067	55,425	21.7%		
계(54,616명)		4,449,289	4,371,215	78,074	1.8%		
사 립	교원 인건비 (15,332명)	보 수	910,595	881,489	29,106	3.3%	○ 기본급 1.8% 인상 반영 ○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원 증가
		법정부담금 등	97,153	82,928	14,225	17.2%	○ 명예퇴직 인원: 330명 ○ 법정부담액대비 법인전입액 감소
		소 계	1,007,748	964,417	43,331	4.5%	
	사무직원 인건비 (1,585명)	보 수	70,246	68,033	2,213	3.3%	○ 기본급 1.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7,597	7,535	62	0.8%	○ 명예퇴직 인원: 10명
		소 계	77,843	75,568	2,275	3.0%	
	교직원성과상여금		60,053	62,153	△2,100	△3.4%	
	교직원맞춤형복지비		12,978	13,055	△76	△0.6%	
	계(16,917명)		1,158,622	1,115,193	43,429	3.9%	
	합 계(71,533명)		5,607,911	5,486,408	121,503	2.2%	

○ 금번 인건비는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었던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등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⁵⁷⁾ 기본급 상승 등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반영되어 전년도 보다 1,215억 3백만원이 증가한 5조 6,07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57)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 현황은 [붙임6] 참고.

○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0.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건비가 3조 6,131억 3천 2백만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15억 5천 1백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4,74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408억 8천 7백만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696억 5천만원, 근로자인건비가 3,104억 9천 2백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으로 1조 1,586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29] 2016~2018년 인건비 결산 내역 및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16	정규직	교원인건비	3,506,298	3,482,681	23,617	0.6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9,984	45,451	4,533	9.07%
		지방공무원인건비	441,135	434,139	6,996	1.59%
		소계	3,997,417	3,962,271	35,146	0.88%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03,999	200,338	3,661	1.79%
		계약제직원인건비	6,800	6,074	726	10.68%
		소계	210,799	206,412	4,387	2.08%
	공립 계		4,208,216	4,168,683	39,533	0.94%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025,242	1,023,995	1,247	0.12%
	공사립 총계		5,233,458	5,192,678	40,780	0.78%
2017	정규직	교원인건비	3,567,553	3,547,435	20,118	0.5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0,071	47,076	2,995	5.98%
		지방공무원인건비	454,762	447,760	7,002	1.54%
		소계	4,072,386	4,042,271	30,115	0.74%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22,017	213,576	8,441	3.80%
		계약제직원인건비	6,152	4,944	1,208	19.64%
		소계	228,169	218,520	9,649	4.23%
	공립 계		4,300,555	4,260,791	39,764	0.92%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065,183	1,054,920	10,263	0.96%
	공사립 총계		5,365,738	5,315,711	50,027	0.93%
2018 (예상)	정규직	교원인건비	3,735,336	3,694,298	41,038	1.1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2,136	49,295	2,841	5.45%
		지방공무원인건비	474,201	460,421	13,780	2.91%
		소계	4,261,673	4,204,014	57,659	1.35%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47,020	223,818	23,202	9.39%
		계약제직원인건비	13,669	13,024	645	4.72%
		소계	260,689	236,842	23,847	9.15%
	공립 계		4,522,362	4,440,856	81,506	1.80%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120,833	1,108,467	12,366	1.10%
	공사립 총계		5,643,195	5,549,323	93,872	1.66%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500억 2천 7백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3%이며 이는 2016년 0.78%보다 0.15% 높은 수치임.

특히 2018년의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의 예상 불용률은 9.39%(232억 2백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역시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평균이상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이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서(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지난 11월 15일 집단교섭(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이 완료되어 향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예정인바, 교육청은 인건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0] 2018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18.4.30기준)⁵⁸⁾

(단위: 명, %)

구분	무기계약 (A)	기간제			소계 (E=B+C+D)	총 인원 (F=A+E)	무기계약 전환률 (G=A/F-B-D)×100
		1년미만 (기간미도래) (B)	1년이상 (전환대상) (C)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공립	유	1,311	768	-	81	1,392	82.81
	초	7,855			2,210	10,065	
	중	3,624			188	3,812	
	고	1,302			259	1,561	
	특수	240			32	272	
	기관	341			276	617	
	계	14,673			3,046	17,719	
사립	초	283	321	-	377	660	52.53
	중	627			429	1,056	
	고	1,248			1,307	2,555	
	특수	311			118	429	
	계	2,469			2,231	4,700	
합 계	17,142	1,089	4,188	5,277	22,419	76.46	

58)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만55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은 [붙임기] 참고.

[표31] 2016~2019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내역(2018.10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정)
급여체계		월급제			
기본급 59)	유형1(영양사 등)	월1,727,220원	월1,787,670원	월1,834,140원	월1,867,150원
	유형2(교육실무사 등)	월1,546,950원	월1,601,090원	월1,642,710원	월1,672,270원
	인상률	3.00%	3.50%	2.60%	1.8%(예정)
처우 개선 수당	근속수당	월5만(근속3년) ~월31만(근속16년)	월5만(근속3년) ~월35만(근속18년)	월5만(근속1년) ~ 월60만(근속20년)	
	급식비	월 8만	월 8만	월 13만	
	명절휴가보전금(설/추석)	연 70만	연 100만		
	정기상여금	연 50만		<17.10월부터> 연60만	
	교통보조비	월 6만			
	가족수당	배우자월4만 직계존비속월2만 셋째자녀이하3만또는8만가산		<17.10월부터> 배우자월4만/직계존비속월2만 둘째자녀월6만/셋째자녀이하월10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186만원			
	위험근무수당 (조리종사원)	월 5만			
	자격가산금(조리사)	월 77,340원	월 80,050원	월 82,130원	월 83,610원
	면허가산수당(영양사)	월 83,500원			
	직무관리수당(영양사)	월 5만원			
	특수 업무 수당	중등사서	월 2만원		
		초등사서 실무사	월 2만원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시급 8,040원	시급 10,000원	시급 10,300원	

[표32] 임금교섭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내역

구분		해당연도	2018년	2019년
근속수당	인상 전(급간 3000원)		44,640,000,000	50,220,000,000
	인상 후(급간 32500원)		45,260,000,000	54,405,000,000
	추가 소요액		620,000,000	4,185,000,000(추경 반영 예정)
정기상여금	1인당 금액		600,000	900,000
	총액		9,300,000,000	13,950,000,000
	추가 소요액			4,650,000,000

※ 2018년 집단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결과

- 근속수당: 급간 30,000원 → 32,500원 (2018.11.부터 적용), 정기상여금: 연 600,000원 → 연 900,000원

59) 기본급 유형

유형1		유형2	
상시근무자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근무자	방학중 비근무자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행정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전문상담사(학교) 중학교 사서	행정실무사(학교/행정기관업무지원)	교육실무사 (교무,과학,전산,실습,사서,특수) 유치원교육실무사 초등사서실무사(자격소지자) 조리원 조리사(선임)

○ 한편 금번 예산안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표 33]와 같이 전년도 보다 5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497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전년도 보다 12.84%가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인상률 6.07%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다소 과한 증액이라고 할 수 있음.

앞서 검토하였듯 현재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단교섭 결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예정되어 있는바, 맞춤형복지비의 과도한 인상은 자칫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 2015~2019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제교원	합계
2015	예산	4,592,765	31,322,465	5,974,050		41,889,280
	보험료지출액	8,230,116		2,089,202		10,319,318
	1인 평균 배정액	641	641	350		
	1인 평균 보험료	140	140	133		
	비율(보험료/배정액)	22%	22%	38%		
	전년 대비 증가율	-5.86%	-7.57%	4.22%		
2016	예산	4,525,460	31,428,230	6,056,000	1,982,250	43,991,940
	보험료지출액	10,533,873		1,812,473	202,358	12,548,704
	1인 평균 배정액	641	641	350	350	
	1인 평균 보험료	182	182	116	33	
	비율(보험료/배정액)	28%	28%	33%	10%	
	전년 대비 증가율	-1.47%	0.33%	1.37%	100%	
2017	예산	5,231,460	36,338,640	7,307,500	2,100,000	50,977,600
	보험료지출액	10,479,398		1,685,381	347,467	12,512,246
	1인 평균 배정액	741	741	450	350	
	1인 평균 보험료	185	185	103	59	
	비율(보험료/배정액)	25%	25%	23%	17%	
	전년 대비 증가율	15.60%	15.62%	20.66%	5.94%	
2018	예산	5,549,160	38,545,440	8,181,000	2,700,000	54,975,600
	보험료지출액	11,799,033		1,962,630	467,895	14,229,558
	1인 평균 배정액	786	786	450	450	
	1인 평균 보험료	216	216	118	58	
	비율(보험료/배정액)	28%	28%	26%	13%	
	전년 대비 증가율	6.07%	6.07%	11.95%	28.57%	
2019	예산(안)	6,262,220	43,481,728	8,181,000	3,300,000	61,224,948
	전년 대비 증가율	12.84%	12.80%	0%	22.22%	

다) 서울교육공론화사업(사업별 설명자료 484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공론화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서울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를 중심으로 연간토론 주제를 상정하여 서울교육정책을 검증·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⁶⁰⁾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서울교육공론화사업	400,960	-	좌동	400,960	좌동	◦ 교육감 공약이행 신규사업

- 금번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위탁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교육정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는 이른바 정책 공론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위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기타운영수당의 산출기초에서 책정한 인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구체성 결여되어 있음.

60)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론화 서울시민참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음(경향신문, 조희연 “교육공론화 서울시민참여단 만들겠다...1호 안건은 두발, 복장 자유”, 2018.6.25.).

- 또한 금번 예산안에는 정책·안전기획관의 정책조정팀에 혁신미래교육정책 학술대회(사업별 설명자료 243p)가 편성되어 있는바, 동 사업 역시 서울교육정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가, 시민,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를 통한 발표와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육공론화사업과 그 취지와 목적, 사업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겠으나,

‘00참여단’, ‘00자문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는바, 교육청은 현재의 외부(전문가, 시민, 학생, 학부모 등)참여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교육정책국

가) 생태환경교육내실화(사업별 설명자료 588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 등 환경이슈가 나날이 증가하고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04,750	342,900	좌동	561,850	좌동	
과학실험폐수 및 폐시약처리	433,000	333,000	좌동	100,0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방식 변경 ○ 미처리 누적량 증가
민간환경 협력사업	43,100	-	좌동	43,1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공약(3-5-4)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109,600	-	좌동	109,6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공약(3-5-4)
환경교육 지도자료개발	50,000	-	좌동	50,0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공약(3-5-4)
환경교육 포럼 운영	4,600	-	좌동	4,6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공약(3-5-4)
환경체험교육운영	264,450	-	좌동	264,45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공약(3-5-4)
학교정원가꾸기운영	-	9,900	좌동	△9,9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폐지

- 금번 예산안에는 민간환경 협력사업 4천 3백만원,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1억 9백만원, 환경체험교육운영 2억 6천 4백만원 등 전년도 보다 5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9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따른 인식 개선과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신규사업인 민간환경 협력사업,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사회교육자원시설 연계 환경체험교육 운영 등의 경우 총 1억 6천만원의 외부위탁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바, 전체 신규사업비의 약 29%를 위탁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⁶¹⁾

나)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사업별 설명자료 683p)

① 사업 개요

-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사업은 최신 IT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조응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170,306	361,696	좌동	7,808,610	좌동	◦ 구축 운영교 수 및 1교당 지원액 증가
스마트스쿨구축 및 운영	1,502,756	361,696	좌동	1,141,060	좌동	
전문성신장 지원	87,550	-	좌동	87,550	좌동	신규사업
혁신미래학교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6,580,000	-	좌동	6,580,000	좌동	신규사업

- 금번 예산안에는 무선랜 설치 등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성신장 지원 사업(8천 8백만원)과 혁신학교에 대한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지원의 (65억 8천만원) 신규사업 편성으로 전년도 보다 78억 8백만원이 증가한 8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61) 교육정책국의 신규사업 중 외부위탁이 포함된 사업 내역은 [붙임8] 참고.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래사회의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모든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 사업 중 ‘혁신미래학교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혁신학교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여지가 있고, 예산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혁신학교만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이라면 혁신학교운영(사업별 설명자료 752p) 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혁신학교운영(사업별 설명자료 752p)

① 사업 개요

- 혁신학교운영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에 따라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목표로 한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업임.⁶²⁾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4,169,644	11,429,844	좌동	2,739,800	좌동	
서울교육 혁신사태 국제사회 공유	20,000	-	좌동	20,000	좌동	◦ 공약 4-3-2 관련(서울교육 혁신사태 국제사회 공유 지원)
혁신교육 국제교류	80,000	-	좌동	80,000	좌동	◦ 공약 4-3-2 관련(혁신학교 교원 국외 연수 지원)
혁신자치학교 지원단 운영	1,600	-	좌동	1,600	좌동	◦ 공약 5-1-1 관련(혁신자치학교 운영 지원)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27,352	27,352	좌동	-	좌동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13,950,000	11,360,000	좌동	2,590,000	좌동	◦ 서울시전입금 포함 ◦ 혁신학교 수 증가 및 혁신자치학교 운영 공모사업자 운영예제 제외에 따른 증액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7,400	5,200	좌동	2,200	좌동	

62) 2018년 10월 기준으로 199개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음([붙임9] 참고).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혁신학교 운영 협의회	6,232	3,232	좌동	3,000	좌동	◦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회수 증가
혁신학교정책연구	30,000	-	좌동	30,000	좌동	◦ 공약 5-1-1 관련 혁신자치 학교 운영 지원
혁신학교 지정 심사	11,160	11,160	좌동	-	좌동	
혁신학교 평가	32,400	19,400	좌동	13,000	좌동	◦ 평가학교 수 확대에 평 가위원 인원 증가
혁신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연구팀 운영	3,500	3,500	좌동	-	좌동	

- 금번 예산안에는 서울교육 혁신사례 국제사회 공유(2천만원), 혁신교육 국제교류(8천만원), 혁신자치학교 지원단 운영(1백만원), 혁신학교정책 연구(3천만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27억 4천만원이 증가한 141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혁신자치학교지원단 운영과 혁신학교 정책연구(혁신자치학교 정책연구)의 경우 ‘혁신자치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혁신자치학교’는 결국 혁신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점과 학교자치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모든 학교의 자치권 확대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대상학교를 혁신학교로만 한정해야할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임.

물론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등 학교자치영역에 있어 선도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혁신학교만을 위한 지원단이나 정책용역이 아닌 전체 학교자치를 위한 기구의 구성이나 이를 위한 정책용역이 수행되어야 교육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라)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사업별 설명자료 798p)

① 사업 개요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은 물가 및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 인상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유치원 재정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원비인상률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580,000	-	좌동	5,580,000	좌동	
학급운영비	5,580,000	-	좌동	5,580,000	좌동	◦ 급당150천원 신규지원

- 금번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55억 8천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누리과정 지원 및 사립유치원인건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⁶³⁾

-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비인상률만을 기준으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공

6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적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바, 학급운영비 지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 여부, 학교회계 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의 찬성 여부 등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34] 2017~2018년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내역

연도	점검 대상 유치원 수	유아학비			교원기본급보조			유치원비 관련	
		점검실시 유치원 수	지적 건수	부정수급 금액	점검실시 유치원 수	지적 건수	부정수급 금액	점검실시 유치원 수	지적 건수
2017	671원	559원	216건	22,842천원	559원	20건	46,034천원	408원	94건
2016	677원	531원	390건	53,910천원	633원	55건	117,543천원	353원	104건

마)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별 설명자료 875p)

① 사업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30,112	717,892	좌동	812,220	좌동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지원	26,462	26,462	좌동	-	좌동	
기획운영	-	29,040	좌동	△29,040	좌동	○ 정책사업 정비결과 (사업폐지) 반영
연수홍보	12,300	18,300	좌동	△6,000	좌동	○ 정책사업 정비결과 (사업축소) 반영
유치원	88,950	11,690	좌동	77,260	좌동	○ 학습연구년 대상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교사 증원
학습연구년제	1,402,400	632,400	좌동	770,000	좌동	◦ 대상 인원 증원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번 예산안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8천 9백만원), 학습연구년제(14억 2백만원) 등 전년도 보다 8억 1천 2백만이 증가한 1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학습연구년제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⁶⁴⁾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7조와 제21조에⁶⁵⁾ 따라 서울교육 실경력 5년 이상인자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만족도조사 환산평어가 각각 4.0 이상인 교원이 자기 연구 및 학습계획에 의한 연구 및 연수를 추진하거나 파견기관 및 연수 위탁기관(대학)에 개설된 전공·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등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임.⁶⁶⁾

64)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66) 지원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8 학습연구년(특별연수) 기본 계획」참고.

다만 금번 예산안의 경우 대상인원을 유치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569명 증원하였는바, 교원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결과도 없이 인원을 무려 403%, 사업비는 222%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교원역량성장지원, 수업방법나눔확산, 수업나눔카페(사업별 설명자료 996~1006pp)

① 사업 개요

- 교원역량성장지원과 수업방법나눔확산, 그리고 수업나눔카페 사업은 모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코칭과 교실수업 개선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업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85,960	-	좌동	1,185,960	좌동	
교원역량성장지원	교원성장 수업코칭 운영	46,500	-	좌동	46,500	좌동	신규사업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	193,310	-	좌동	193,310	좌동	신규사업
수업방법나눔확산	더불어수업나눔	132,600	-	좌동	132,600	좌동	신규사업
	수업혁신네트워크 구축	206,750	-	좌동	206,750	좌동	신규사업
수업혁신기반구축	수업나눔카페	606,800	-	좌동	606,800	좌동	신규사업

- 금번 예산안에는 교원성장 수업코칭(4천 6백만원),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1억 9천 3백만원) 등 5개의 세세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들은 모두 수업코칭, 교원간의 교수법 공유 등을 통한 수업나눔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수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업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당위성과 공감대 확대와는 별개로 수업나눔카페 사업의 경우 60개교에 공간 구성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6억원 지원하도록 편성하였는바,

학교 내 수업나눔 및 컨설팅 공간을 확보하여 상시적인 수업나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학생들의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사업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나눔카페 설치가 과연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보다 시급한 것인지 등에 대해 자원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사)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030p)

① 사업 개요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사립학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을 위탁채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41,340	12,360	좌동	128,980	좌동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	141,340	12,360	좌동	128,98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험 과목 추가에 따른 평가원 위탁출제비 증가 ○ 위탁법인 2차시험경비지원

○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보다 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34]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실시(공·사립 선택지원)	2011년	'1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
사립교원임용시험 위탁제도 확대(공·사립 동시지원제 시행) T/F 운영	15.4. ~ 5.	
교원임용시험 공·사립 동시지원제 도입	'15.7.	'16학년도 시험부터 도입
공·사립 동시지원제 전국 확대 공론화 추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임용시험 시·도공동관리위원회)	'15년도	
나이스 온라인 교원채용 시스템 개선 요청 (온라인 공·사립 동시 원서접수 및 시험관리 기능 개선 요구)	'15.6. '17.2.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감과 사립학교(법인) 관계자와의 간담회	'16.10.4. '17.9.20.	
위탁 참여 법인 대상 만족도 및 의견 조사 실시	'18.3.19. ~ 3.22.	
교원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선 주관교육청 운영	'18.5.~'19.4. (진행중)	'20학년도부터 도입 예정

○ 동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사립 학교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자율적 사학기관 운영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학교법인(특히 종단 설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 선발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법인의 참여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며, 67)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딱히 위탁채용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교원 채용을 위탁한 학교법인의 경우 자체 진행하는 제2차 시험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위탁을 독려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음.

67) 2016~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연도별	사립 학교수 (a)	위탁 현황				비율 (f=c/a)
		학교법인수 (b)	사립학교수 (c)	과목수 (d)	인원수(명) (e)	
2015년(2016학년도)	162	8	10	13	40	6.2%
2016년(2017학년도)	136	9	12	11	29	8.8%
2017년(2018학년도)	155	16	23	21	63	14.8%

다만 지원예산의 실질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종근당고촌학원 대동세무고의 사례를 보면 3개 교과에 각 1명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제2차 시험운영비로 약 8백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생각해 볼 경우, 각 학교법인마다 채용교과별 인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여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별 설명자료와 같이 학교법인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선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038p)

① 사업 개요

-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1)’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추진 계획」(교육청, 2017.12)에 따라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및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일반고와 자공고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200,000	660,000	좌동	3,540,000	좌동	교육감 공약사업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 지원	3,600,000	660,000	좌동	2,940,000	좌동	◦ 지원학교 증가 (21→180개)
수업환경개선	600,000	-	좌동	600,000	좌동	◦ 지원학교 신규지정 (60개)

-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지원학교 수 증가와 이에 대한 시설비 지원으로 인해 35억 4천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단위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선택교육과정은 단위학교 내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선택과목 운영, 학교 밖 지역사회학습장을 활용한 선택과목 운영, 학교 간 학사일정 공유를 통한 정규교육과정 내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개방형선택교육과정 운영 및 소인수과목·심화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중심의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등(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및 연합형 또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동시 운영) 단위학교의 상황과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 현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다만 개방형선택교육과정의 확대,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에 따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할 경우,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또 다른 인건비 부담을 강제하게 될 것인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인수 선택과목을 위한 강사비 등의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또한 동 사업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고와 자공고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수업환경개선비는 대상학교 180개교 대비 1/3 수준인 60개교만 편성되었음.

이와 관련해서는 동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전용교실 구축과 같은 기반시설 확보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대상학교별 유휴교실 현황 등과 같은 학교별 활용가능 공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평생진로교육국

가) 평생교육시설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370p)

① 개요

- 동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에 초·중학교 과정(의무교육과정) 학습비와 재정부족 시설의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교육기회 제공 확대 및 평생교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279,931	9,798,435	9,818,435	1,481,496	1,461,496	
특성화고 형태 평생교육시설장학금	1,816,350	1,897,535	좌동	△81,185	좌동	◦ 지원 학생수 감소 (2,140→1,850명)
인문계고 형태 평생교육시설장학금	1,745,921	-	좌동	1,745,921	좌동	◦ 사업 신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70,000	70,000	좌동	-	좌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실태조사	3,150	2,700	좌동	450	좌동	◦ 조사 시설수 증가 (4→10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연수비	5,750	1,000	좌동	4,750	좌동	◦ 연수 대상자 증가(13→26명)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지원	7,408,760	7,672,200	좌동	△263,440	좌동	◦ 지원 교직원수 등 감소(170→129명)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210,000	155,000	좌동	55,000	좌동	◦ 지원 시설수 등 증가(6→7개)
평생교육기획운영	20,000	-	20,000	20,000	-	

- 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14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11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문계고형태평생교육시설장학금 사업을 신설하면서 17억 4천 6백만원 증액하였고, 지원 시설 증가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사업비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특성화고형태평생교육시설장학금 사업은 지원 학생수 감소로 8천 1백만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은 교직원 감소 등으로 2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31조⁶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에⁶⁹⁾ 근거하여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 교직원 인건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성화고형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필요 재원을 대응투자하여 특성화고에 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음.⁷⁰⁾

68)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9)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

2. 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70) 직업분야 2018년 특별교부금(국가시책) 교부 계획(안)(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4339, 2017.10.19.)

* 대응투자 비율 ‘교육부:교육청=2:8’

- 다만 「평생교육법」 제16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에서는 그 지원범위를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인문계고형태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사업을 신설하여 17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35] 2018년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인당 학습비 지원 기준⁷¹⁾

(단위 : 원)

구분	초등	중학	특성화고		비고
			3년제	2년제	
분기 지원액	294,000	375,000	344,550	516,810	
연 지원액	1,176,000	1,500,000	1,378,200	2,067,240	

- 물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에게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특성화고형태 평생교육시설장학금과 달리 동 사업은 교육청 자체재원만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현재 교육부가 준비 중인 고교무상교육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동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1) 2018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등 지원 기본계획안(평생교육과-1088, 2018.1.17.)

나)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사업별 설명자료 1393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교지원형 평생교육을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습문화를 확산하고, 평생교육 기관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 내)에서는 평생교육 재능기부 및 인적자원 발굴, 전문가과정 교육 실시, 평생교육 연수,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67,010	160,770	좌동	6,240	좌동	
평생교육봉사단운영	106,350	-	좌동	106,350	좌동	◦ 사업 통합
서울평생교육봉사단운영	-	75,110	좌동	△75,110	좌동	◦ 사업 통합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	31,240	좌동	△31,240	좌동	◦ 사업 통합
서울평생학습축제	-	8,000	좌동	△8,000	좌동	◦ 정책사업정비결과 폐지
평생교육관계자연수운영	9,060	8,100	좌동	960	좌동	◦ 관리자 연수 차량 및 임차료 상승
전문가양성 과정	14,380	13,900	좌동	480	좌동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3,220	5,220	좌동	8,000	좌동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24,000	19,200	좌동	4,800	좌동	◦ 성인문해교육 계속교육 과정 수업시수 증가

-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1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평생교육봉사단으로 통합운

영하면서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의 정책사업정비 결과 서울 평생학습축제 사업이 폐지되면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퇴직 인력(교원, 공무원, 전문가)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94명이 위촉·활동하고 있음.

[표36]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위촉 현황

(기준 : 2018.2.23.)

구 분	성 별		연령별			경력별				계
	남	여	50대	60대	70대이상	교직	공무원	기업	기타	
인원수(명)	41	53	8	30	56	58	10	11	15	94
백분율(%)	44	56	9	32	59	61	11	12	16	100

- 다만, 2019년도부터 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통합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인생이모작센터의 교수업무 영역으로 편입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교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⁷²⁾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예산에는 전년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예산 3천 1백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 중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사업별 설명자료 1406p)

① 개요

- 동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⁷³⁾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6. 4월 설립되어 본격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음.

72) 2018년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계획(마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34, 2018.1.5.)

73)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평생교육과-6001, 2016.3.30.)

[표37]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429,000	841,377	1,506,047	1,769,198
전년대비 증감		412,377	664,670	263,151

○ 교육이모작지원센터는 총 60개 봉사단(1,217명)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퇴직교직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대상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동 사업의 예산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표38] 최근 3년간 퇴직교원인생2모작 사업 실적

(기준: 2018.9.30.)

년도	인력풀	봉사단	봉사활동자	추진사업 건 수	업무협약 체결건수
2018	2,090	60	1,217	17	8
2017	1,647	42	849	15	2
2016	1,052	26	323	2	4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대비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769,198	1,506,047	1,669,547	263,151	99,651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본운영	252,678	240,187	317,687	12,491	△65,009	
정책자문단 운영	11,800	37,300	좌동	△25,500	좌동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워크숍	15,840	13,680	좌동	2,160	좌동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519,680	407,160	좌동	112,520	좌동	◦ 지역교육지원청 센터 설립(서부, 남부)
퇴직(예정)교직원 연수	7,280	8,360	좌동	△1,080	좌동	
추진실무 및 공모봉사단 운영	403,820	356,160	442,160	47,660	△38,340	◦ 추진실무봉사단확대 (30명→55명)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종합설명회	13,600	10,200	좌동	3,400	좌동	
「행정지원봉사단」 운영	65,200	0	좌동	65,200	좌동	◦ 사회공헌발굴업무수행 (40명)
「기초학력반」봉사단 운영	45,220	59,960	좌동	△14,740	좌동	
「그린 에듀」봉사단 운영	259,180	187,700	좌동	71,480	좌동	◦ 사업확대 (100명→250명)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대비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행복한 상담실」봉사단 운영	9,950	15,030	좌동	△5,080	좌동	
「숲사랑숲체험 봉사단」운영	29,290	28,310	좌동	980	좌동	
「Book 소리 지원단」운영	69,260	57,200	좌동	12,060	좌동	◦ 사업확대 (80명→100명)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운영	34,400	30,000	좌동	4,400	좌동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23,200	45,600	좌동	△22,400	좌동	
우수기관 방문 및 사업협력 유관기관 개발	8,800	9,200	좌동	△400	좌동	

-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6천 3백만원이(20%) 증가한 17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유관기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센터 설립을 추가하면서 1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지원봉사단」 운영 등 각종 봉사단 운영비로 1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계획⁷⁴⁾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
- 또한, 퇴직교직원의 각종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에 14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활동비가 13억 2천 6백만원으로 동 봉사활동비가 동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예산의 92.3%,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전체 예산의 75.0%에 이르고 있음.

74)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평생교육과-6001, 2016.3.30.)

[표39] 퇴직교원 봉사단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도 본예산	봉사활동 지원비	
		산출내역	금액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519,680	봉사활동 20,000원*470명*51회	479,400
추진실무 및 공모봉사단 운영	403,820	공모봉사단 20,000원*10명*30개단*25회	150,000
		추진봉사단 20,000*16회*55명*12월	211,200
		개인활동 20,000원*100명*10회	20,000
「행정지원봉사단」 운영	65,200	봉사활동 20,000원*40명*80회	64,000
「기초학력반」 봉사단 운영	45,220	봉사활동 20,000원*80명*25회	40,000
「그린 에듀」 봉사단 운영	259,180	봉사활동 20,000원*80교*5명*30회	240,000
「행복한 상담실」 봉사단 운영	9,950	봉사활동 20,000원*20명*22회	8,800
「숲사랑.숲체험 봉사단」 운영	29,290	봉사활동 20,000원*15명*95회	28,500
「Book 소리 지원단」 운영	69,260	봉사활동 20,000원*100명*30회	60,000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운영	34,400	봉사활동 20,000원*20명*60회	24,000
계	1,436,000		1,325,900

- 한편,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⁷⁵⁾

[표40] 서울특별시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5,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등

75)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육청은 자체규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봉사활동 규정(2018.3.1., 개정)」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의 성격, 종류, 시간에 따른 봉사활동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교육봉사의 경우 1일 8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경우 최대 4만원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며, 일반봉사의 경우 1일 8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경우 2만원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봉사활동지원비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1개월에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⁷⁶⁾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자원봉사활동의 대가 없는 자발적 참여 취지와 서울시 조례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이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실비 성격의 교통비와 급식비를 8천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봉사활동비는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의 봉사활동비 13억 2천 6백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6억 6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더불어 교육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지원, 봉사활동비 지급

7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봉사활동 규정(2018.3.1., 개정)」

제10조(지원 금액) 봉사활동비는 활동 내용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 ① 교육봉사는 1일 2시간당 1만원을 지원한다. 단, 2시간 미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② 일반 봉사활동은 1일 4시간당 1만원을 지원한다. 단, 1회 4시간 미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③ 위촉직 봉사단은 1일 4만원으로 한다.
- ④ 추진실무봉사단은 수시활동비로 2시간당 1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회의 참석 봉사활동지원비는 1회당 2만원으로 하며, 모니터링활동비는 1회당 2만원으로 한다.
- ⑤ 봉사활동지원비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으며, 1개월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위촉직 봉사단은 예외로 하며, 추진실무봉사단은 수시활동비에 한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⑦ 공모사업 봉사단별로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대표는 월 8시간(월 4만원) 추가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단, 공모사업 봉사단 이외의 센터주관사업, 부서협력사업 및 유관기관협력사업 봉사단은 대표활동이 있을 시 공모봉사단에 대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445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복지 여건 구축을 통해 학업에 대한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맞춤형지원 강화로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을 운영하여 상담, 진로, 복지 등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위해 노원·고덕·영등포·마포평생학습관에 거점기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의 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최근 3년간 전체 학업중단 학생 33,621명 중 12,576명(37.4%)이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9.3%에 달하는 9,015명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표41]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서울)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합계		
	총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수
2015	450,422	4,437	446	263,466	2,532	774	308,306	4,175	2,879	1,022,194	11,144	4,099
2016	436,121	4,412	442	239,801	2,228	685	299,556	4,310	2,940	975,478	10,950	4,067
2017	426,903	4,677	478	227,001	2,330	736	281,317	4,520	3,196	935,221	11,527	4,410
합계	1,313,446	13,526	1,366	730,268	7,090	2,195	889,179	13,005	9,015	2,932,893	33,621	12,576

- 한편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경비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50,658	591,089	좌동	359,569	좌동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376,598	365,244	좌동	11,354	좌동	◦ 치료상담프로그램 증액 및 학력인정프로그램 교구 구입 증액
학교 밖 청소년 거점기관 운영	-	225,845	좌동	△225,845	좌동	◦ 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감액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개설	87,900	-	좌동	87,900	좌동	◦ 공약사항으로 신설
학교 밖 청소년기본수당	486,160	-	좌동	486,160	좌동	◦ 공약사항으로 신설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9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사업에 3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8천 8백만원을, 학교 밖 청소년기본수당 4억 8천 1백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거점기관 운영사업은 시설확충을 완료하여 2억 2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은 2019년도 학업중단 학생 중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이는 학교 밖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만을⁷⁷⁾ 지급대상으로 하

77)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 학업중단 이외도 퇴학, 유학, 실종 등 그 사유가 다양해 정확한 통계 수치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는 것으로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학칙 위반으로 제적·퇴학된 청소년이나 타 시·도 거주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에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교육기본수당 지급범위가 지급요건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식비, 교통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 학습비·학원수강료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만 수당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절차가 없어 수당 지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 범위에 포함된 온라인 학습비·학원수강료 항목은 대학입시 또는 고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의 성격으로 이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일례로 중앙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 직업 훈련, 직장체험(인턴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동기 제고를 위해 심리상담, 검정고시 지원 및 자립장려금·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⁷⁸⁾,

서울시의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취업) 지원, 검정고시 학습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을⁷⁹⁾ 실시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10,9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2018년 10월 기준으로 친구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218명임.

7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내일이룸학교> 2018년도 운영기관 선정(2018.1.16.)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생은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

- 출퇴근형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7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계획(청소년정책과-1704, 2018.1.25.)

가)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확대

(지원대상)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지원내용) 인턴십 활동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총95,000천원)

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50명

(지원내용) 1인당 연 1,000천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실비 지원(총154,500천원)

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청소년 150명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총250,500천원)

[표42] 2018년도 내일이름학교 운영 현황

연번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기간)	인원	기숙사
1	서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2018.02.01.- 2018.12.21., 11개월)	50명	제공
2		애란원 (청소년 한부모)	간호조무사과정 (2018.03.05.- 2018.12.20., 10개월)	15명	제공
3		사회복지법인 CJ나눔재단	바리스타, 단체급식 (2018.03.23.- 2018.8.30., 5개월)	24명	출퇴근
4	대구	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론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2018.02.01.- 2018.12.31., 11개월)	20명	출퇴근
5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미용사(네일)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2018.03.12.- 2018.12.21., 10개월)	20명	출퇴근
6	충남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과제빵과정 (2018.03.05.- 2018.12.14., 10개월)	20명	출퇴근
7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꿈을 위한 미용사 양성 (2018.03.02.- 2018.12.20., 10개월)	20명	제공
8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원)	헤어미용 (2018.03.05.- 2018.12.15., 10개월)	20명	제공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교육기본경비 지급으로 인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통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중복예산 지원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동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명과 관련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라 는 점에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계획성,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마) 학교안전망구축(사업별 설명자료 1517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62,396	1,303,098	좌동	△40,702	좌동	
배움터지킴이운영	74,880	70,400	좌동	4,480	좌동	◦ 봉사활동 수당 증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18,400	7,410	좌동	10,990	좌동	◦ 연수비 증액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	1,024,000	1,036,936	좌동	△12,936	좌동	◦ 통신회선료 지원 중단
초등학교안심서비스	130,416	188,352	좌동	△57,936	좌동	◦ 신규 학교 지원 종료
학생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특별교부금)	14,700	-	좌동	14,700	좌동	◦ 2019년 국가시책사업(학생 건강 및 안전) 특별교부금

- 학교안전망구축 사업은 전년도 보다 4천 1백만원 감소한 12억 6천 2백 만원을 편성하였음.

주된 감액 사유는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의 경우 통신회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안심서비스’의 경우에는 신규 학교 지원이 종료되어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임.⁸⁰⁾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배움터지킴이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국립학교 8개교(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80) SK텔레콤과 MOU계약 종료(2016년~2018년)로 신규학생 지원 중단
단, 2018년 신규 지원자는 2020.2월(2년간)까지 지원함(학교생활교육과-2018, 2018.2.9.)

3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학교를 제외한 사립초·중·고·특수 학교는 학교기타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배움터지킴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보안관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학교를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지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상학교를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까지 확대함.⁸¹⁾
-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금번 예산안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예산에 국립 특수학교 3개교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시키고 있는바,⁸²⁾ 국립 특수학교 3개교에 대한 사업비 2천 8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⁸³⁾

바)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670p)

① 개요

- 동 사업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취업진로 영역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맞춤형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임.

8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82) 배움터지킴이운영 소요예산: 74,880천원(봉사활동 수당 48,000원×195일×8교=74,880천원)

83) 서울시 2019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평생교육국, 870p)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 특수학교 추가배치 인건비(13교) 13개교×2명×26,012,576.9원=676,327천원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A-C)	
계	920,000	600,000	좌동	320,000	좌동	
서울형글로벌현장 학습단운영	-	300,000	좌동	△300,000	좌동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 운영 폐지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920,000	300,000	좌동	620,000	좌동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운영 사업을 폐지 하면서 3억원을 감액하고, 기존 사업을 특성화고국제화지원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6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인원 감소 및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취업률 저조 등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임.
- 한편 2018년에 추진된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 운영 사업을 폐지하고 특성화고국제화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6억 2천만원 증액 하였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직업체험 준비를 위한 교육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43]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사업내용 비교

구분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운영(폐지)	특성화고국제화지원(변경)
사업내용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구성 글로벌현장학습단 파견전 사전교육 글로벌현장학습단 해외파견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 운영평가	외국어교육 보조인력 운용 해외 직무외국어 교육지원 특성화고 학생 맞춤형국제화교육지원 국제화교육 워크숍, 홍보 및 연수 북방교포 초청을 위한 방문

○ 특히 사업 내용 중 ‘북방교포 초청을 위한 방문, 외국교사(학생) 초청·체류’는 북방지역학생을 초청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포자녀초청 기술교육」 사업⁸⁴⁾과 유사한 중복사업의 성격이고,

국제화교육 홍보 사업 또한 「특성화고 지원」 사업⁸⁵⁾에 특성화고등학교 홍보비 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별도의 홍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외국어교육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 2천 9백만원과 관련하여, 학교별 자매결연, 외국어 통번역 등 업무 지원에 필요한 보조인력은 교육청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⁶⁾

사) 전국체육대회(사업별 설명자료 1709p)

① 개요

○ 동 사업은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서울 학생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최지 자동출전 등으로 증가된 참가 학생 및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84) 「교포자녀초청기술교육」사업 (20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68~1569pp)

85) 「특성화고지원」사업 (20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21~1628pp)

86) 참여협력담당관(국제협력팀) :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외빈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국제이해교육 지원,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등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26,168	700,950	좌동	525,218	좌동	
전국체육대회 운영비(본청)	693,250	693,250	좌동	-	좌동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교육지원청)	7,700	7,700	좌동	-	좌동	
100회 체전준비단	525,218	-	좌동	525,218	좌동	◦ 100회 체전 개최지 특 별운영비

- 전국체육대회 사업은 전년도 보다 5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12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된 증가 사유는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5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인 ‘100회 체전 준비단’ 내역을 살펴보면,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는 체전 준비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유공 교원에 대한 국외연수는 다른 참여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기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유공 교원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유공 교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공지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외연수 대신 유공 교원을 확대하여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⁸⁷⁾

아) 무상급식(사업별 설명자료 1884p)

① 개요

- 동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확대된바 있음.
- 한편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⁸⁸⁾, 2019년부터 국·공·사립고등학교 3학년과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31,438,258	308,259,235	417,330,313	23,179,023	△85,892,055	
무상급식	331,438,258	308,259,235	351,895,005	23,179,023	△20,456,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초 및 고교 무상 급식 확대 ◦ 식품비 : 농·축산물가상승을 반영 ◦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상승
무상급식 (서울시지원금)	-	-	65,435,308	-	△65,435,308	

87) 금번 예산안 중 국외연수비의 경우 산출기초가 모두 상이하다는 문제점도 있음(구체적인 내역은 [붙임10] 참고).

88)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학교급식 단계적 시행(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0.29.)

- 무상급식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1억 8천만원이 증가한 3천 314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된 증액 사유는 고등학교 및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식품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2019년 시범운영 학교의 무상급식비로 고등학교 106억 7천 7백만원, 국·사립초 51억 1천 2백만원 등 총 157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9개 자치구 96개교, 국·사립 초등학교 11개 자치구 21개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에서 각각 50%, 30%, 20%를 분담함.

[표44] 고등학교 및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소요액('19년 시범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 수	학생수	편성 단가	편성 일수	소요예산	교육청분담 (50%)	서울시분담 (30%)	자치구분담 (20%)
중 구	11	2,416	5,406	168	2,194,231	1,097,116	658,270	438,847
성동구	9	2,036	5,406	168	1,849,112	924,556	554,734	369,823
동대문	11	2,685	5,406	168	2,438,539	1,219,270	731,562	487,708
중랑구	10	2,350	5,406	168	2,134,289	1,067,145	640,287	426,858
강북구	7	1,947	5,406	168	1,768,281	884,141	530,485	353,657
도봉구	10	2,593	5,406	168	2,354,984	1,177,492	706,496	470,997
동작구	7	2,159	5,406	168	1,960,822	980,411	588,247	392,165
관악구	17	3,438	5,406	168	3,122,420	1,561,210	936,726	624,484
강동구	14	3,888	5,406	168	3,531,113	1,765,557	1,059,334	706,223
소계(9)	96	23,512			21,353,791	10,676,898	6,406,138	4,270,759

초	종로구	3	1,139	4,649	188	995,500	497,750	298,650	199,100
	중 구	3	1,736	4,649	188	1,517,285	758,643	455,186	303,457
	용산구	1	372	4,649	188	325,133	162,567	97,540	65,027
	성동구	1	610	4,649	188	533,148	266,574	159,945	106,630
	동대문구	3	1,835	4,649	188	1,603,813	801,907	481,144	320,763
	중랑구	1	567	4,649	188	495,565	247,783	148,670	99,113
	도봉구	2	1,316	4,649	188	1,150,200	575,100	345,060	230,040
	노원구	4	2,632	4,649	188	2,300,400	1,150,200	690,120	460,080
	마포구	1	464	4,649	188	405,542	202,771	121,663	81,109
	강서구	1	328	4,649	188	286,676	143,338	86,003	57,336
	동작구	1	698	4,649	188	610,061	305,031	183,019	122,013
	소계(11)	21	11,697			10,223,323	5,111,662	3,066,997	2,044,665
합 계	117	35,209			31,577,114	15,788,560	9,473,135	6,315,424	

- 이와 관련하여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참여 자치구를 확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2019년도의 경우 전체 자치구 중 일부만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로써의 무상급식의 근본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내에서도 단지 지역적 차이로 인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음.
- 다만 2019년도 예산 편성당시에는 시범사업에의 불참여를 표시했던 자치구들이 예산편성 이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바, 2019년부터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인지, 그 경우 소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19년도 무상급식 시범운영에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경우의 소요 경비는 약 2천 208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교육청은 전체 분담액의 50%인 1,104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표45] 고등학교 및 국.사립초등학교 학교 무상급식 예산소요액
(전체 자치구 참여시)**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19년 (사(국)초, 국제중 + 고3)	2020년 (사(국)초, 국제중+고 2, 3)	2021년 (사(국)초, 국제중+고 전체)
합 계	97,205	158,223	220,872
서울시	29,161	47,467	66,261
교육청	48,603	79,111	110,437
자치구	19,441	31,645	44,174

- 한편 교육청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2019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될 경우 현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학기중평일중식지원”사업 중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은 이중 지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9)

[표46] 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예산 편성 내역 (고3)

(단위 : 교, 명, 천원)

구분	설립	학교수	대상인원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전체 자치구	공립	116	5,794	3,816,481	인원수×4,860원×147일×0.922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율 7.8%(=0.922) 반영
	사립	200	9,238	6,498,974	인원수×4,860원×157일×0.922	
	계	316	15,032	10,315,455		
9개 자치구	공립	41	2,420	1,594,043	인원수×4,860원×147일×0.922	
	사립	55	2,660	1,871,323	인원수×4,860원×157일×0.922	
	계	96	5,080	3,465,366		

89) 「학기중평일중식지원」사업 (20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75~477pp)

자)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1억 이상인 사업의 증액 편성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8년도 본예산 (F)	2019년도 예산안 (G)	증액 (G-F)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불용액 (D)	불용률 E=D/A			
학교폭력예방대책	1,347	1,214	133	9.9%	2,107	2,301	194
학생상담센터운영	3,439	3,164	275	8.0%	3,107	4,656	1,549
중등스포츠강사지원	9,464	8,824	640	6.8%	10,034	10,061	27

- 2019년도 예산 편성 사업 중에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특히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별 설명자료 1522p)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23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주된 증가 사유는 교육법률지원단 상임변호사 인건비(인상분 포함), 여비 등 운영비가 1억 8천 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학교폭력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지원비가 1천 2백만원 증액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의 2017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의 주된 사유가 교육법률지원단 상임변호사 인건비 및 출장비 집행잔액으로,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교육행정국

가) 학교설립추진(사업별 설명자료 1910p)

① 개요

- ‘학교설립추진’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학생배치계획의 마련 및 각급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

이 중 ‘유치원취학수요 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취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교원 수급 등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은 중랑구에 설립예정인 가칭)동진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용역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유치원취학수요 조사용역	150,000	-	-	150,000	-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	100,000	70,000	-	30,000	-

- ‘유치원취학수요조사 용역’은 2019년도 서울시 취학권역(98개)내 유치원 취학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은 2018회계연도 본예산 7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선 '유치원취학수요'에 대한 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3년을 주기로 누리과정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0~2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에 유치원취학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 조사한 자료는 만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내년도에도 서울시 유아교육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와 유아수용계획 조사 시기를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2019년도에 다시 유치원취학수요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존 조사의 활용가능성과 동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적절성 등의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음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은 중랑구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이 학교부지의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가칭)동진학교 학교설립지로 중랑구 314-1번지 일대를 선정하였음.

그러나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으로 현재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는바, 동 부지에 동진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수용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4년 8월 21일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 재수립 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학교부지 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선정한 중랑구 314-1번지 일대도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입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동 용역사업의 추진 역시 취소 및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동진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수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사학기관운영평가(사업별 설명자료 1928p)

①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관내 초·중·고 등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재정과 운영, 학교행정 등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및 25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학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13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운영평가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 9개 법인에 대해서는 6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까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47] 사학기관 운영평가 평가체계

평가영역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기구	
Ⅰ 법인재정	25%	1.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3	10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4	15		
Ⅱ 법인운영	40%	1. 법인이사회 운영 정확성	3	14		
		2. 법인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	3	13		
		3. 교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3	13		
Ⅲ 학교행정	30%	1. 학교재정 운영의 건정성 및 효율성	3	13		
		2. 학교행정의 효과성	4	17		
가 점		학교법인(학교)경영 우수사례	1	+5		
감 점		관할청 행정처분 미이행	1	(-5)		
3개영역	100%	7개	25개	100점		

[표48]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내역

포상 부문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액(천원)	시상자
종합평가 우수기관(6)	종합 금상	1개 법인 × 11,000천원	11,000	교육감
	종합 은상	1개 법인 × 9,000천원	9,000	
	종합 우수상	4개 법인 × 8,000천원	32,000	
평가영역별 우수기관(3)	법인재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법인운영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학교행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계		9개 법인	70,000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계	78,600	78,600	-	-	-
평가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	70,000	70,000	-	70,000	-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	8,600	8,600	-	6,200	-

- 사학기관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백 6십만원 을 편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학기관운영평가’ 사업은 2016년도부터 사립학교 법인에게 자기진단 기회를 제공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우수기관의 경영 우수사례를 다른 사학기관에 전파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사학기관에 대한 각종 연수 제공 및 표창 추천시 소속직원에게 대한 우선 선발권 등 행정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교 법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인센티브는 2018년도 기준으로 평가대상 113개 법인⁹⁰⁾ 중 7.9%에 해당하는 9개 법인에게만 차등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학교법인은 최대 1천 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바,
- 사학기관의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당초 동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센티브의 지급은 사학기관의 운영평가 지표를 개선하거나 학교시설 개선 및 학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오히려 법인 관계자 및 교사들을 위한 연수비용 등 단순 소모성비용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우수법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인센티브의 지급이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거두었는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 및 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동 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사립학교 운영지도(사업별 설명자료 1937p)

① 개요

- ‘사립학교 운영지도’는 학교법인 담당자의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과 함께 회계 운영·지도 및 회계 지침의 제작과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 대비 81.7%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직원 직무연수’는 140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374개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양강

90) 서울시 전체 140개 학교법인 중

평가제외 법인: 유치원 또는 각종학교만 경영하는 법인(10), 재단법인(5), 학교 미설치 법인(2), 대학법인 이관 학교법인(1) / 2017년 평가결과 우수법인(9)

좌, 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등의 연수를 연 2회 실시하는 동시에 사학 운영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직원 등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국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임.

- 또한 ‘사립학교 회계 운영·지도’는 다양한 사립학교 회계운영·지도를 위한 법률자문료의 지급과 사립학교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회계 예·결산 및 에듀파인 집중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계	123,840	112,212	-	11,628	-
사립학교(법인) 직원 직무연수	101,190	103,462	-	△2,272	
사립학교 회계 운영·지도	16,650	2,750	-	13,900	
사립학교 학교회계 지침 제작	6,000	6,000	-	-	

- ‘사립학교(법인)직원 직무연수’ 예산은 총 1억 1백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안 대비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구성은 국내연수를 위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6천 1백만원과 국외 연수 4천만원임.

또한 주된 감액사유는 운영비 중 교재 제작 및 인쇄비의 단가 하락으로 인한 것임.

- 한편 ‘사립학교 회계 운영·지도’ 예산은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 회계직원 대상 연수비용이 신설됨에 따른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립학교 운영지도’ 사업은 전체 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 중 사립학교 학교회계의 지침을 제작하기 위한 교재 제작 및 인쇄비 6백만원과 사립

학교 회계운영·지도를 위한 법률자문료 3백만원 등 약 9백만원을 제외한 1억 1천 5백만원의 대부분이 직원의 연수비용임.

- 특히 동 사업에서 진행되는 연수의 내용이 대부분 사학 간의 정보교류 및 국내 문화탐방,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시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대효과 역시 협력체제 구축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단순 소모성 연수의 추진이 사립학교의 건전성 확보에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학교신·증설(사업별 설명자료 1958~1966pp)

① 개요

- 교실증축은 과대·과밀학급을 완화하여 학급당 적정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유치원 22개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50개교가 대상임.
- 또한 학교신설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증가된 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단설유치원 3개원과 병설유치원 11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2개교, 기타 4개교 등 총 31개교가 대상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C)	본예산 (A-B)	추경 (A-C)
계	132,439,269	161,074,707	207,344,206	△ 28,635,438	△ 74,904,937
교실증축	47,524,475	37,012,283	42,836,580	10,512,192	4,687,895
학교신설	84,914,794	124,062,424	164,507,626	△ 39,147,630	△ 79,592,832

- 2019회계년도 교실증축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28.4% 증가한 475억 2천 4백만원이며, 학교신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1.6% 감액된 849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신·증축’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사업비의 적정성과 증축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적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취득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자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또한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91)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위법한 편성이라 하겠음. 92)

91)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중앙의뢰심사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

- 그러나 금번 학교신·증설 사업 중 4개교((가칭)동진학교, (가칭)남산유치원, (가칭)거암초, (가칭)거암중)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28억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편성이라 하겠음.

더욱이 (가칭)거암초와 (가칭)거암중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 시기의 조정 및 초·중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사유로 재검토 결정⁹³⁾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교시기 조정 대안과 초·중 시설에 대한 공간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조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단축과 계획된 개교시기를 위해 불가피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93)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예산담당관-7159, 2018.9.12.)

하게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사업초기부터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더욱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⁹⁴⁾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수시심사를 의뢰한다 해도 최대 30일이 소요되는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감안한다면 굳이 이번 예산안에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시급히 동 예산을 편성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법정절차를 위반한 사업비를 긴급히 편성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신설 중 개원2초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결과 초·중시설에 대한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통과⁹⁵⁾ 되었으나,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채, 사업비 12억 1천 4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예산편성으로 주의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학교신설 중 도립유치원 건은 초등학교 유휴교실(별관)을 활용하여 3학급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개원 예정시기가 2021년 3월임.

94)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절차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95)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예산담당관-7159, 2018.9.12.)

그러나 도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지만 기존의 유희교실을 활용하여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통상 기존 공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사 시작 후 학교 개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도립유치원의 설립 예산을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것은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997p)

①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년도 학교시설 개방 실적을 기초로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함.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계	9,000,000	6,000,000	9,010,075	3,000,000	△10,075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000,000	6,000,000	-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지원 (서울시전입금)	3,000,000	-	3,010,075	3,000,000	△10,075

-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의 경우 서울시전입금 3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의 동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총 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공립학교 체육시설 중 운동장에 대한 개방률은 87%, 체육관은 69%로 전년도 보다 개방률이 낮아짐.

[표49] 2017~2018 공립학교 체육시설 개방률

(단위: 교, 2018년 2월 기준)

연도	운동장					체육관				
	전체	개방	미개방	미보유	개방률	전체	개방	미개방	미보유	개방률
2017	965	843	109	13	89%	965	599	222	144	73%
2018	965	828	124	13	87%	965	578	256	131	69%

- 더욱이 개방시간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지급구간 중 가장 낮은 지급구간인 7구간은 총 236교로 평균 약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바, 동 구간은 개방시간이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에서 350시간 미만으로, 이를 월평균 개방시간으로 환산시 최소 4.2시간에 불과함에도 지원을 받고 있음. 더욱이 7구간은 2017년도 196개교에서 2018년도 236개교로 지급 대상학교수가 40교나 늘었음.
- 이처럼 동 사업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의 달성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인센티브 지급과 학교시설 개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50] 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구간별 지원액

(단위: 천원)

구간	개방시간	학교 수	개방 인센티브(60억)		시설보수비(30억)		합계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1구간	1,600시간 이상	89	23,457	2,087,673	11,728	1,043,792	35,185	3,131,465
2구간	1,350시간 이상 ~ 1,600시간미만	46	16,149	742,854	8,074	371,404	24,223	1,114,258
3구간	1,100시간 이상 ~ 1,350시간미만	64	13,353	854,592	6,676	427,264	20,029	1,281,856
4구간	850시간 이상 ~ 1,100시간미만	69	11,097	765,693	5,548	382,812	16,645	1,148,505
5구간	600시간 이상 ~ 850시간미만	79	7,849	620,071	3,924	309,996	11,773	930,067
6구간	350시간 이상 ~ 600시간미만	82	5,052	414,264	2,526	207,132	7,578	621,396
7구간	50시간 이상 ~ 350시간미만	236	2,165	510,940	1,082	255,352	3,247	766,292
합계		665	-	5,996,087	-	2,997,752	-	8,993,839

바)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사업별 설명자료 2000p)

① 개요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 되어 온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도에 ‘20대 교육협력사업’의 발표를 통해 2018년도까지 총500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립하겠다고 하였음.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옥상을 활용한 햇빛발전소의 설치를 장려해왔으며,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주체에 따라 한전SPC형⁹⁶⁾과 협동조합형⁹⁷⁾으로 구분하여 4백만원과 4천만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

96) 한전SPC형은 한전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전과 햇빛새싹발전소(주)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임. 서울시교육청은 한전과 2016년 12월 7일 햇빛발전소 설치 업무 협력(MOU)을 체결함.

97) 학교햇빛발전소의 유형은 협동조합형, 민간발전사업자형(일반 민간발전사업자형, 한전SPC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모두 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 유지 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형의 경우 절차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KW당 3만원인 반면, 한전SPC형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일반 민간발전사업자형보다 사업운영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료 면에서 다른 형태보다 KW당 1만원이 높은 4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표51]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교육청 지원)	○ 1교당 운영비 - 협동조합형: 금4,000만원(교육청) - 협동조합형 외: 금400만원(교육청), 한전spc형은 750만원 추가 지원
----------------------	--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30,200	955,000	좌동	△624,800	좌동
햇빛발전소설치대상학교 현장조사	18,400	28,000	좌동	△9,600	좌동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	100,000	400,000	좌동	△300,000	좌동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협동조합형)	200,000	400,000	좌동	△200,000	좌동
햇빛발전소 설치활성화연수	11,800	11,800	좌동	-	좌동
자기형햇빛발전설비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	110,000	좌동	△110,000	좌동
교육연계활동비	-	5,200	좌동	△5,200	좌동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예산은 전 회계연도 기준 6억 2천 5백만원 감액된 총 3억 3천만원으로, 이 중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협동조합형)’은 전 회계연도 기준 2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협동조합형이 아닌 ‘한전SPC형’의 경우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전 회계연도 기준 3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예산 감액은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상 학교수가 감소(110개교→30교) 됨에 따른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햇빛발전소를 2018년까지 500개 학교에 설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웠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여 협동조합형은 1교당 4천만원, 그 이외의 설치형태(한전SPC)는 1교당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음.

[표52 햇빛발전소 추진 목표98)

(단위 : 교)

추진 방식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협동조합 형	2	25	25	25	25	102
전기발전사업자 형	7	95	95	95	106	398
계	9	120	120	120	131	500

-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소 설치교는 2018년 기준 총 111교로 당초 추진목표 대비 22.2%에 불과하며, 2018년도에는 1개교만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였음.
- 더욱이 동 예산안에서 2019년도 설치 대상학교수를 전년도 110개에서 30개교로 대폭 낮추고, 운영비 지원액 역시 전 회계연도 대비 50%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와 같은 사업규모의 축소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예산 투입 대비 설치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햇빛 발전소의 추진이 당초 계획목표와 달리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동 사업을 존속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3]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기준 : 2018.10. 단위 : 교)

연도별	설치 형태별				합계
	민간	한전spc형	협동조합	서울시 시범	
2013	1		2		3
2014	6			3	9
2015	2		6	2	10
2016	1	1	2		4
2017		80	4		84
2018			1		1
합계	10	81	15	5	111

98) '햇빛발전소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교육재정과-9117, 2015.4)

사) 학교배상책임공제회(사업별 설명자료 2016p)

① 개요

- ‘학교배상책임공제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도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⁹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한 공제중앙회에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학교배상책임 공제 지원	294,641	305,763	-	△11,122	-

- ‘학교배상책임공제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6%(1천 1백만원) 감액된 2억 9천 5백만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와 비교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물적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음.

99)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 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54]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비교

설치기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치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육부장관
보상대상	○ 인적피해 (학교 교직원 및 학생, 교육활동참여자)	○ 인적·물적 피해 -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 -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한 제3자 피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제외) ○ 학교급식 관련 과태료 ○ 학교 보관 관리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 ○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한 피공제자 차량파손 피해
가입대상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가입권자	○ 학교장	○ 학교장
가입비	○ 유치원: 1인당 2,250원 ○ 초등학교: 1인당 3,990원 ○ 중학교: 1인당 7,980원 ○ 고등학교: 1인당 9,870원	○ 1인당 300원

-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배상책임공제료를 사업예산을 통해 일괄 납부하고 있으나, 납부한 공제료에 비해 실제 배상받은 금액은 평균 13.1%에 불과함.
- 이와 같이 납부액 대비 지급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학교배상책임공제료 납부에 대해 개선책의 마련 없이 매년 공제료를 사업비로 편성해 납부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55] 학교배상책임공제료 납부 및 배상현황

(기준 : 2018.10. 단위: 천원)

연도	공제료 납부액	배상 내역		비고
		건수	배상액	
2012	384,838	34	33,099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가입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
2013	366,065	29	23,046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2014	352,994	60	32,839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2015	0	46	37,220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청 일괄가입 중단 및 학교 자체예산으로 가입 추진
2016	340,350	48	33,265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2017	311,734	51	35,929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2018	301,616	128	75,351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공제료 산정 기준과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 공제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동 사업과 같이 공제료 납입을 통한 피해보상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 일반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사업별 설명서 2027p, 2053p, 2061p, 2142p, 2165p)

① 개요

- ‘시설사업비’ 중 ‘시설개선비’는 ①‘일반시설비’와 ②‘급식시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시설비’는 ‘학교시설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이 사업비의 96%를 차지함.

‘학교시설증개축’은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이 63교, 기타 특별교실 증축이 7교이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노후교사 개축 1교, 화장실개선 등 총 17개 세부사업별 시설 개선이 총 2,027건임.

‘급식시설비’는 총 634건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21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이 53개교 57건, 조리기구교체는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34건과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376건 등 총 410건, 급식시설보수는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67건임.

②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비고
시설 개선	일반 시설					
	학교 시설 증개 축	84,826	72,575	12,251	16.9%	○ 강당 겸 체육관 : 63교 - 설계비 편성교 3교 포함 ○ 기타증축 : 7교
	교육 환경 개선	410,668	386,849	23,819	6.2%	○ 노후시설개선(21개사업) - 노후시설개축 1건 포함
	본 청 시 설 관 리	166	130	36	27.7%	○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4건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비고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545	5,483	△938	△17.1%	○ 11개교육지원청시설유지보수 ○ 강남서초 청사 증축 등 19건
	직속기관시설관리	14,216	9,404	4,812	51.2%	○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 등 36건
	소 계	514,421	474,441	39,980	8.4%	
급식시설	조리기구교체	21,954	23,452	△1,498	△6.4%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등 410건
	급식시설보수	17,707	7,267	10,440	143.7%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67건
	급식시설신증축	40,559	46,655	△6,096	△13.1%	○ 53교
	소 계	80,220	77,374	2,846	3.7%	
계		594,641	551,815	42,826	7.8%	

- 2019회계연도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41억 9천만원(2.0%) 이 증가한 7,270억 8천만원으로, 이 중 시설개선 예산은 전년도 대비 7.8%(428억 2천 6백만원) 증가한 5,946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함.
- 시설개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환경개선’은 전년도 대비 6.2%(238억 1천 9백만원) 증가한 4,106억 6천 8백만원이며, 학교시설증개축은 전년도 대비 16.9%(1322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848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급식시설 신증축’은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된 405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급식시설보수’는 전년도 대비 143.7%의 증가한 177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높은 증액률은 2018회계연도에 83건이던 개보수 건수가 2019회계연도에 167건으로 많아졌기 때문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각 사업 분야별 서열화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후순위 사업이 다른 교육지원청의 선순위 사업보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지역별, 단위사업별 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우선순위 선정시기와 실제 사업시행시기 간의 기간의 차이로 인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원되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예년과 달리 일률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학교수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포괄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¹⁰⁰⁾로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무실 확장 및 리모델링, 행정실 새단장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실제 상도유치원의 경우처럼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무원칙적인 포괄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포괄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00) 포괄사업비 집행기준(「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집행개선.(교육시설안전과-11273, 2017.12.26.)

구분		비고
지원대상	공·사립학교	2018년부터 사립 포함
집행범위	시설비·자산취득비	
심의위원회 운영	-	기관장 고유적 판단 존중
지원횟수 및 금액	연간 학교당 1회, 1회 2,000만원 이하	
집행부서	재정지원과	

자) 건축공간정책(사업별 설명서 2265p)

① 개요

- 건축공간정책은 학교공간의 변화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디자인 정책사업을 개발 연구 및 지원하는 사업임. 이 중 ‘디자인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은 학교공간의 디자인 정책사업을 위한 각종 연수를 추진하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디자인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38,800	-	15,200	38,800	23,600

- ‘디자인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2천 4백만원 증액(155%)된 3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해외혁신 공간디자인현장연수 1천 2백만원이 증액의 동 사업의 주된 증액사유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디자인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예산의 증액 사유는 디자인 정책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본래 목적과 다른 단순 소모성 연수의 추진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사업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실시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차) 디자인혁신사업(사업별 설명서 2276p)

① 개요

- ‘디자인혁신사업’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꿈을 담은 교실, 미래를 담은 학교(도서관 및 특별교실),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신한옥 학교시설 구축,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디자인혁신사업(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중 꿈을 담은 교실은 2017년도에 서울시 전입금 35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20억원 등 총 55억원의 예산으로 21개교에 꿈을 담은 교실 및 교무·행정실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서울시 전입금 35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99억원 등 총 1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4개교를 대상으로 꿈을 담은 교실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

[표56]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주제	2018년 사업			2017년 학교수
		급별	대상	학교수	
꿈담교실	초등학교 꿈담교실	초	공모	22	20
	한옥형교실	초	재동초	1	-
	다문화 특별학급	초	협조부서 지정	2	-
	학교도서관 문화시설	중	협조부서 지정	5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공연)	중	공모	3	-
	개방-연합형 교육과정(홈베이스)	고	공모	3	-
소통 어울림 교무·행정 리모델링		중·고	공모	9	1
7개 분야 계				45	21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꿈을 담은 교실	6,810,000	6,600,000	7,100,000	210,000	△290,000
중고교 꿈담교실	3,300,000	3,300,000	-	-	-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C)	본예산(A-B)	추경 예산(A-C)
꿈을 담은 교실 (서울시전입금)	3,400,000	-	3,300,000	3,400,000	100,000
다양한 모델 개발 (특수학급공간혁신)	1,800,000	-	-	1,800,000	-
미래를 담은 학교	1,800,000	-	-	1,800,000	-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4,400,000	-	-	4,400,000	-
신한옥 학교시설구축	620,000	60,000	-	560,000	-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2,900,000	2,029,750	1,989,279	870,250	910,721
우리학교 고운색입히기 (서울시전입금)	1,500,000	750,000	-	750,000	-
디자인혁신사업 백서발간 (서울시전입금)	100,000	-	100,000	100,000	-

○ ‘꿈을 담은 교실’ 관련 사업예산은 215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서울시전입금 34억과 교육청과 자치구 협력사업에 따른 대응투자 15억 1천만원 및 사업확대에 따른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최초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이 사용하는 학교 교실을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초등학교 20개교, 1·2학년 103실을 대상으로 실당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었음.

○ 이후 동 사업은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되어 초등 25개교, 중등 11개교 등 총 36개교 실당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꿈을 담은 교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초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교무·행정실 및 교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꿈을 담은 교실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실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꿈을 담은 교실’ 사업비로 사업의 추진목적과 맞지 않는 교무·행정실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물론 다양한 학교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한 환경개선이 학생들의 재능발달 및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무·행정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일부 ‘꿈을 담은 교실’사업이 추진하는 목표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겠으나, 교장실 리모델링이 학생들의 재능발달 및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더욱이 교무·행정실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된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 교실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이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 및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교장·교무·행정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7] 꿈을 담은 교실 사업 지원 및 집행현황 일부내역

연도	청별	사업구분	학교명	설립별	사업대상	실수	예산액	예산집행액
2017	북부	교무행정실	상천초	공립	교무, 행정	3	180,000	173,153
2018	강남서초	교무행정실	경원중	공립	교장, 교무, 행정	6	360,000	360,000
	강서양천	교무행정실	삼정중	공립	교무실	3	220,000	220,000
	동부	교무행정실	청량고	공립	교무, 행정	2	213,000	-
	동부	교무행정실	장평중	공립	교무실	3	180,000	176,649
	동작관악	교무행정실	관악중	공립	행정, 교장	2	120,000	118,979
	동작관악	교무행정실	신림중	공립	행정, 교장, 교무	4	240,000	240,000
	북부	교무행정실	창복중	공립	행정, 방송	2	130,000	106,304
	북부	교무행정실	월계중	공립	교장, 교무, 행정, 학년부	7	390,000	385,617
	서부	교무행정실	연서중	공립	교장, 교무, 행정, 현관	5	295,000	278,840

카) 명시이월(예산안 1891p)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¹⁰¹⁾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2018회계연도 본예산액을 기준으로 총 249건 1,678억 9천 9백만원이며 예산액(9조 1,512억 6천 7백만원) 대비 이월률은 1.8%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2.5%인 308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58]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A)	건수	명시이월액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B)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9	9,343,217	249	167,899	1.8	30,843	22.5
2018	9,151,267	223	137,056	1.5		

- 명시이월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2.5%, 학교신증설 25.8%, 학교시설증개축 18.1%, 학교급식환경개선 10.9%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명시이월 발생의 주요 사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업부서에 서는 명시이월 남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59]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건수	예산액	명시이월		
			금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249	201,152,941	167,899,436	100.0	83.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1	74,400,333	54,555,841	32.5	73.3
학교신증설	10	51,808,700	43,350,040	25.8	83.7
학교시설증개축	47	30,930,427	30,323,889	18.1	98.0
학교급식환경개선	28	18,640,581	18,235,282	10.9	97.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	12,821,454	12,821,454	7.6	100.0
교육지원청시설관리	6	2,128,342	2,118,126	1.3	99.5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	1,592,000	1,564,011	0.9	98.2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2	1,800,000	1,500,000	0.9	83.3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	1,152,629	1,152,629	0.7	100.0
직속기관시설관리	1	1,000,000	1,000,000	0.6	100.0
학생생활지도지원	4	508,000	475,670	0.3	93.6
학교환경위생관리	2	3,740,000	230,000	0.1	6.1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	174,500	174,500	0.1	100.0
교육과정운영	2	140,125	133,497	0.1	95.3
도서관운영지원	1	100,000	100,000	0.1	100.0
학교보건관리	1	50,000	50,000	0.0	100.0
학력평가관리	1	71,000	37,697	0.0	53.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	36,000	26,000	0.0	72.2
체육대회지원	1	33,000	26,000	0.0	78.8
시설사업관리	12	25,850	24,800	0.0	95.9

○ 한편 2019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중 사업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도서관운영지원 및 학교보건관리 등 6개 사업(10건), 151억 9천 9백만원으로,

○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의 교부시기 및 사업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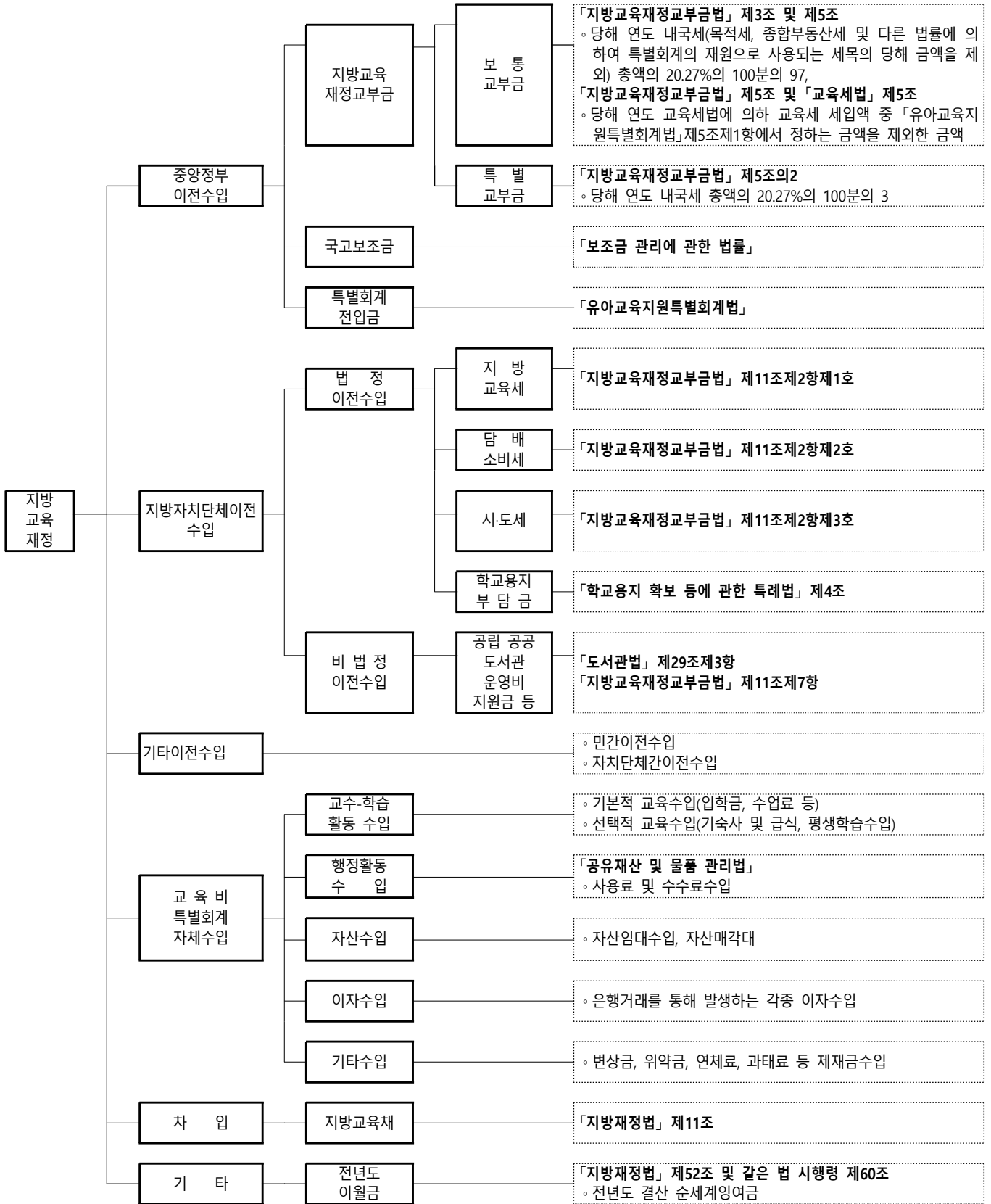
[표60] 사업예산 100%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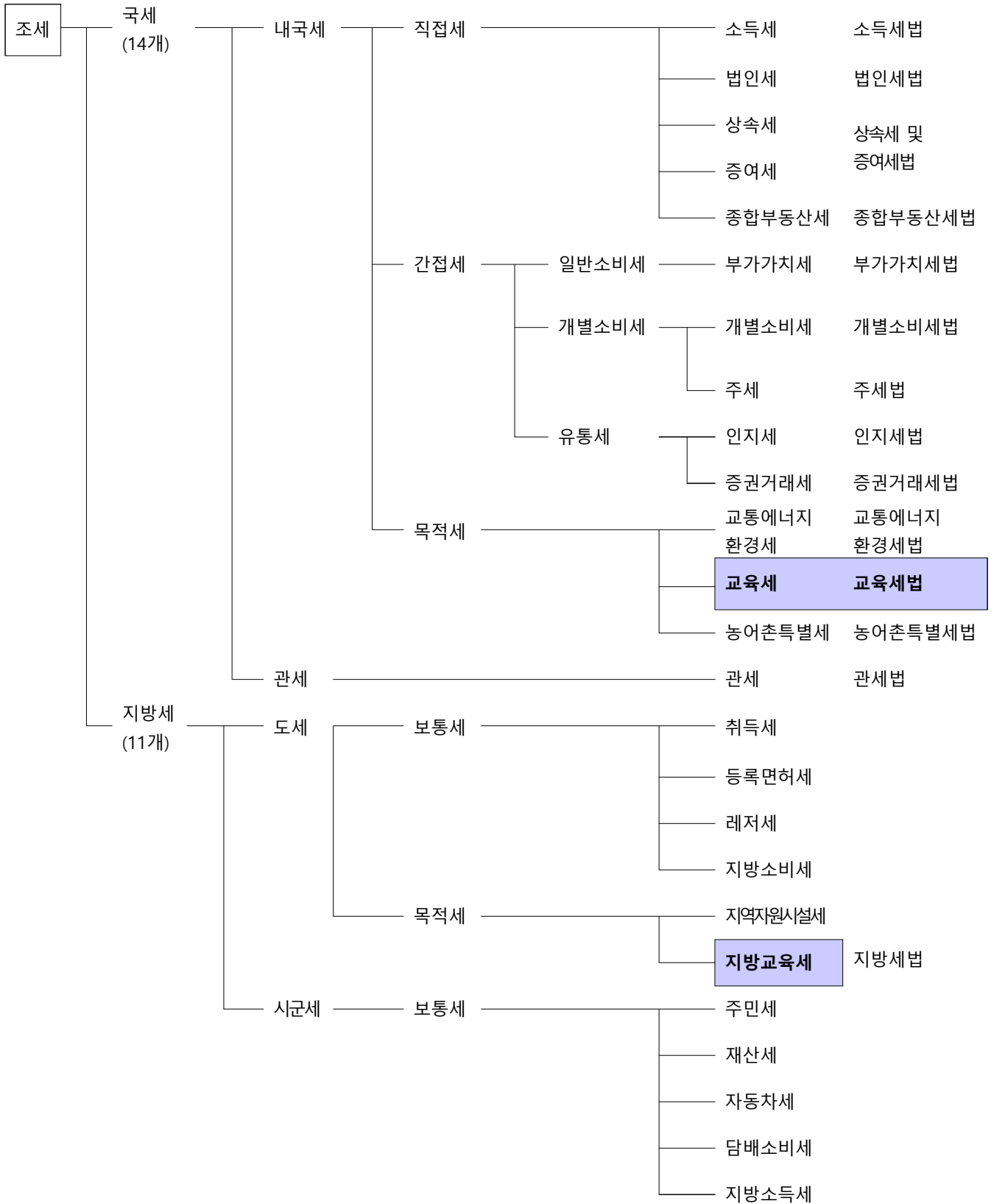
사업명	건수	명시이월액	사유
합계	10	15,198,583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3	12,821,454	○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시스템구축 -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합추진 사업 추진 일정 지연 ○ 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특별교부금) - 2018.10 교부로 사업 추진 불가능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	1,152,629	○ 차세대지방교육행정시스템구축(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합추진 사업 추진 일정 지연
직속기관시설관리	1	1,000,000	○ 교육시설관리본부 신축(이전) -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대상지 재검토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	174,500	○ 수업실습형심화연수 - 2019년 상반기 추진 예정 ○ 영어능력함양현심화연수 - 2019년 상반기 추진 예정
도서관운영지원	1	100,000	○ 개포도서관 건립 운영 통합계획 연구용역 -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사업의 미확정으로 용역 추진 지연
학교보건관리	1	50,000	○ 당뇨학생 건강관리 지원 - 보건복지부 소아당뇨학생 관리 가이드라인(2018년 11월말) 마련후 자료 개발 예정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세목별 조세체계



[붙임3]

저소득층 가정 현황 및 지원 사업 개요

□ 2018년 저소득 가정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총 학생수 (A)	저소득 가정 학생 수						비율 (B/A ×1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 (B)	
초	423,516	14,895	1,970	2,572	8,602	2,018	30,057	7.10%
중	215,199	11,610	1,108	1,195	4,793	1,111	19,817	9.21%
고 (고교 과정 학평 포함)	261,077	18,407	1,847	1,604	8,545	2,382	32,785	12.56%
합계	899,792	44,912	4,925	5,371	21,940	5,511	82,659	9.19%

※ 총 학생수(A): 2018. 4. 1.자

※ 저소득 가정 학생 수(B)

-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득 조회 결과에 따른 학생 수
- 2018. 10. 18.자(NEIS 통계 자료)

□ 2018년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학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교육비</div> 교육감 재량 사업	학비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 1~3
	학기중평일 중식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장추천	학기중 중식비 (학교별 급식 단가 전액)	고 1~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 60만원 이내 ※소진자는 15만원 추가 지원(최대 75만원, '18년 신설)	초1~고3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월 17,600원	초1~고3
	기타수익자 부담경비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수련활동비 126,000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378,000원 ○ 매 학년마다 수련활동,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각 1회 지원	초4~고3

구분	세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학년	
교육 급여 국가 의무 지출	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교육)	○부교재비	66,000원	초1~초6
				105,000원	중1~고3
			○학용품비	50,000원	초1~초6
				57,000원	중1~고3
			○교과서대 (교과목 교과서 전체)		고1~3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고1~3	

□ 2018~2019년도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학비지원	22,411	27,486	좌동	△5,075	좌동
학기중평일 중식지원	27,993	29,911	좌동	△1,918	좌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20,239	22,504	좌동	△2,265	좌동
인터넷통신비 지원	3,873	4,145	좌동	△272	좌동
기타수익자 부담경비지원	7,685	8,765	좌동	△1,080	좌동
교육급여지원	41,101	44,186	45,397	△3,085	△4,296
합 계	123,302	136,997	138,208	△13,695	△14,906

[붙임4]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대상	연도별 금액					비고
		2017	2018	2019	2020	계	
미래학교 기반조성	서울시 관내학교	150	150	150	150	600	
마을 공동체 운영	서울시 관내학교	100	100	100	100	400	
정책·소통 지원	교육청, 각 기관	100	100	100	100	400	
갈등 치유 지원	지역사회, 교육청	50	50	50	50	200	
명사초청 대화	교육청	30	30	30	30	120	
각종 행사 지원	교육청, 관내학교	250	250	250	250	1,000	
지방의회와의 협업	지방의회, 교육청	50	50	50	50	200	
동계강화 훈련비	서울시 관내학교	500	500	500	500	2,000	
도심속 농촌학교 운영	서울시 관내학교	110	50	50	50	260	
도농교육 교류사업	서울시 관내학교	100	100	100	100	400	
지구촌마을 탐험대회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100	100	100	100	400	
선진 기관(농업 등) 방문	교직원	250	250	250	250	1,000	
찾아가는 테마연수	교직원	50	50	50	50	200	
사랑의 쌀 나눔	사회적 배려대상자	50	50	50	50	200	
학술교류 관련 장학금 지원	상록과학 학술재단	30	30	30	30	120	지원 보류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전국(소년)출전 선수단	30	30	30	30	120	
학교안전공제회지원	학교안전공제회	0	60	60	60	180	
합 계		1,950	1,950	1,950	1,950	7,800	

[붙임5]

교육사업비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교육복지사업비	1,269,263	65.3%	1,262,435	6,828	-162.4%	653,656	615,607
교육복지지원	1,269,263	65.3%	1,262,435	6,828	-162.4%	653,656	615,607
교과서지원	58,234	3.0%	52,144	6,090	-144.9%	58,234	-
교육급여지원	41,101	2.1%	44,186	△3,085	73.4%	11,915	29,186
교육복지우선지원	51,689	2.7%	51,282	407	-9.7%	51,075	614
기타교육복지지원	348	0.0%	348	0	0.0%	348	-
누리과정지원	577,146	29.7%	601,621	△24,475	582.2%	1,247	575,899
방과후학교운영	81,397	4.2%	64,236	17,161	-408.2%	79,407	1,990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0,509	1.1%	22,743	△2,234	53.1%	20,509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0,218	1.6%	36,428	△6,210	147.7%	30,200	18
정보화지원	3,873	0.2%	4,145	△272	6.5%	3,873	-
토·공휴일중식지원	5,459	0.3%	5,629	△170	4.0%	5,459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9,858	2.0%	41,503	△1,645	39.1%	31,958	7,900
학기중급식비지원	359,431	18.5%	338,170	21,261	-505.7%	359,431	-
일반교육사업비	675,756	34.7%	686,788	△11,032	262.4%	561,598	114,158
교수-학습활동지원	500,494	25.7%	447,673	52,821	-1256.4%	401,068	99,426
ICT활용교육지원	1,854	0.1%	1,511	343	-8.2%	399	1,455
검정고시관리	776	0.0%	728	48	-1.1%	776	-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5,029	0.8%	13,780	1,249	-29.7%	11,324	3,705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679	0.2%	6,508	△1,829	43.5%	4,679	-
교과교육연구회지원	980	0.1%	265	715	-17.0%	266	714
교과자료개발보급	128	0.0%	169	△41	1.0%	128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903	0.2%	1,679	2,224	-52.9%	3,903	-
교실수업개선지원	1,186	0.1%	-	1,186	-28.2%	1,186	-
교육과정운영	18,949	1.0%	11,456	7,493	-178.2%	5,909	13,040
교육연구운영지원	4,034	0.2%	3,418	616	-14.7%	4,034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5,376	0.3%	3,724	1,652	-39.3%	3,525	1,851
대안교육운영지원	4,963	0.3%	6,065	△1,102	26.2%	4,963	-
대학수학능력시험	13,359	0.7%	4,945	8,414	-200.1%	200	13,159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59	0.0%	716	243	-5.8%	766	193
마이스터고운영지원	4,100	0.2%	4,100	0	0.0%	4,100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8,678	1.0%	15,459	3,219	-76.6%	16,073	2,605
방송통신중·고운영	1,228	0.1%	1,721	△493	11.7%	1,228	-
사립유치원지원	53,277	2.7%	40,051	13,226	-314.6%	53,217	60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957	0.0%	575	382	-9.1%	957	-
수석교사제운영	817	0.0%	897	△80	1.9%	817	-
스마트교육지원	12,914	0.7%	5,329	7,585	-180.4%	8,617	4,297
연구시범학교운영	942	0.0%	1,810	△868	20.6%	942	-
영재교육운영	633	0.0%	438	195	-4.6%	292	341
영재교육원운영	4,094	0.2%	3,926	168	-4.0%	4,094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외국어교육활동지원	3,780	0.2%	4,066	△286	6.8%	2,142	1,638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3,558	1.7%	30,852	2,706	-64.4%	27,095	6,463
유아교육지원	2,622	0.1%	3,030	△408	9.7%	2,273	349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062	0.3%	4,441	621	-14.8%	4,087	975
진로진학교육	7,427	0.4%	6,323	1,104	-26.3%	4,954	2,473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163	0.1%	1,243	△80	1.9%	1,163	
창의인성교육운영	446	0.0%	374	72	-1.7%	271	175
체육육성종목지원	1,040	0.1%	1,040	0	0.0%	1,040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167	0.1%	2,107	60	-1.4%	2,167	-
특색교육과정운영	81,738	4.2%	90,801	△9,063	215.6%	72,080	9,658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46,295	2.4%	43,420	2,875	-68.4%	37,115	9,180
특성화고운영지원	3,242	0.2%	791	2,451	-58.3%	792	2,450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4,426	0.2%	3,619	807	-19.2%	1,949	2,477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380	0.2%	3,745	635	-15.1%	2,803	1,577
특수교육복지지원	13,378	0.7%	13,060	318	-7.6%	13,378	
특수교육운영	9,321	0.5%	8,841	480	-11.4%	9,321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087	0.1%	1,051	36	-0.9%	1,087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3,838	0.7%	12,811	1,027	-24.4%	13,838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5,401	1.3%	24,198	1,203	-28.6%	19,030	6,371
학교평가관리	534	0.0%	476	58	-1.4%	534	
학교폭력예방지원	6,614	0.3%	6,882	△268	6.4%	3,600	3,014
학력평가관리	8,603	0.4%	7,248	1,355	-32.2%	7,103	1,500
학력향상지원	3,023	0.2%	3,897	△874	20.8%	572	2,451
학생봉사활동지원	53	0.0%	97	△44	1.0%	53	
학생상담활동지원	14,950	0.8%	13,500	1,450	-34.5%	14,950	-
학생생활지도지원	5,979	0.3%	7,744	△1,765	42.0%	5,543	436
학생수련활동지원	5,383	0.3%	5,235	148	-3.5%	5,322	61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21,169	1.1%	17,511	3,658	-87.0%	14,411	6,758
인적자원운용	27,933	1.4%	24,985	2,948	-70.1%	27,869	64
교원연수운영	3,523	0.2%	3,329	194	-4.6%	3,523	-
교원연수지원	3,255	0.2%	3,455	△200	4.8%	3,255	-
교원인사관리	3,148	0.2%	2,160	988	-23.5%	3,084	64
교원임용관리	4,882	0.3%	4,175	707	-16.8%	4,882	-
교직원단체관리	917	0.0%	397	520	-12.4%	917	-
교직원복지대여	87	0.0%	87	0	0.0%	87	-
교직원복지지원	7,092	0.4%	6,376	716	-17.0%	7,092	-
근로자인사관리	464	0.0%	348	116	-2.8%	464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04	0.1%	1,641	163	-3.9%	1,804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025	0.1%	951	74	-1.8%	1,025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773	0.0%	435	338	-8.0%	773	-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63	0.0%	1,631	△668	15.9%	963	-
보건/급식/체육활동	28,864	1.5%	19,760	9,104	-216.6%	21,602	7,262
체육대회지원	7,717	0.4%	7,447	270	-6.4%	5,257	2,460
학교급식관리	483	0.0%	404	79	-1.9%	483	-
학교급식운영	480	0.0%	456	24	-0.6%	480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학교보건관리	7,131	0.4%	6,764	367	-8.7%	2,329	4,802
학교환경위생관리	13,053	0.7%	4,689	8,364	-199.0%	13,053	-
평생교육	27,430	1.4%	25,170	2,260	-53.8%	26,034	1,396
도서관운영지원	7,636	0.4%	7,630	6	-0.1%	6,936	700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2,311	0.6%	10,309	2,002	-47.6%	11,857	454
평생학습운영지원	7,483	0.4%	7,231	252	-6.0%	7,241	242
직업교육	702	0.0%	702	0	0.0%	702	-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702	0.0%	702	0	0.0%	702	-
교육행정일반	90,333	4.6%	168,498	△78,165	1859.3%	84323	6,010
감사관리	545	0.0%	508	37	-0.9%	545	-
결산관리	84	0.0%	86	△2	0.0%	84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9,570	1.0%	39,768	△20,198	480.4%	16,570	3,000
교육정책기획관리	858	0.0%	550	308	-7.3%	858	-
교육정책홍보	4,327	0.2%	4,184	143	-3.4%	4,327	-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365	0.1%	4,306	△1,941	46.2%	1,907	45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235	0.3%	21,370	△15,135	360.0%	4,382	1,853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521	0.0%	362	159	-3.8%	521	-
기관평가	16	0.0%	39	△23	0.5%	16	-
대외교육협력관리	6	0.0%	6	0	0.0%	6	-
민원관리	158	0.0%	735	△577	13.7%	158	-
법무관리	644	0.0%	627	17	-0.4%	644	-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45	0.0%	130	15	-0.4%	145	-
사학기관관리	337	0.0%	341	△4	0.1%	337	-
선거관리	-	0.0%	32,039	△32,039	762.1%	-	-
시설사업관리	27,602	1.4%	37,814	△10,212	242.9%	27,461	141
예산관리	889	0.0%	955	△66	1.6%	889	-
의정활동지원	90	0.0%	64	26	-0.6%	90	-
재무회계관리	6,035	0.3%	5,397	638	-15.2%	6,035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169	0.1%	1,094	75	-1.8%	1,169	-
정보보안관리	5,143	0.3%	5,008	135	-3.2%	4,930	213
조직및성과관리	200	0.0%	259	△59	1.4%	200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9,000	0.5%	9,000	0	0.0%	9,000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359	0.2%	3,821	538	-12.8%	4,014	345
행정개선활동지원	35	0.0%	35	0	0.0%	35	-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교육청 간접고용 현황)

업무	배치장소 (본청,교육지원청,도서관, 학교 등)	계약당사자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	인원 (명)	연간 평균 임금 (원)
당직전담원	본청	교육감	6	25,314,666
	교육지원청	교육장	7	15,200,032
	도서관	도서관장	13	13,844,913
	보건진흥원	보건진흥원장	1	14,315,000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장	5	22,458,065
	연수원	연수원장	1	18,652,801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1	14,171,640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장	6	17,820,112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9	15,544,442
	학생체육관	학생체육관장	2	26,377,780
미회원	본청	교육감	23	20,562,782
	교육지원청	교육장	26	17,675,030
	도서관	도서관장	45	20,997,168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장	16	19,796,719
	연수원	연수원장	17	21,720,684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4	22,033,618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장	23	21,385,087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27	22,539,785
	학생체육관	학생체육관장	10	21,437,910
	학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310	21,416,147
시설관리원	본청	교육감	22	27,983,636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장	9	25,807,116
	연수원	연수원장	13	27,696,723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4	24,511,815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9	33,723,136
	학생체육관	학생체육관장	7	24,875,163
	학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438	28,014,386
콜센터상담원	본청	교육감	36	23,733,133
계			1090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단위: 명)

정원관리 대상			정원관리 비대상		
순	직종명	합계	순	직종명	합계
1	유치원교육실무사	224	1	기숙사 사감	23
2	교육실무사(교무)	865	2	청소	247
3	교무행정지원사	1,074	3	통학차량 실무사	39
4	교육실무사(과학실험)	935	4	학교보안관	1,117
5	교육실무사(전산)	563	5	학습자료보조	35
6	중학교 사서	275	6	자율학습 감독	62
7	교육실무사(사서)	626	7	운전원	21
8	교육실무사(실습)	131	8	운동부조리,급식	5
9	구학부모회 직원	754	9	시설기능공	41
10	사무행정실무사	288	10	시설관리	109
11	특수교육실무사	815	11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97
12	돌봄전담사	1,419	12	배식 및 급식세척	863
13	특수교육케어강사	81	13	방과후사무실무사	26
14	유치원에듀케어강사	786	14	돌봄교실보조	143
15	영양사	411	15	당직(방호)	3
16	조리사	895	16	기타	49
17	조리원	3,880	소 계		2,880
18	전문상담사	387			
19	지역사회전문가	273			
20	유아교육복지전문가	11			
21	프로젝트조정자	23			
22	유아교육사	12			
23	수련지도사	69			
24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40			
25	학부모상담사	2			
소 계		14,839			
총 계			17,719		

[붙임8]

2019 예산안 교육정책국 신규사업 중 외부위탁 사업 내역

번호	주관부서	사업항목		2019년 예산안	
				산출기초(단위:원)	예산액 (단위:천원)
1	교육혁신과	대학서열화 완화지원	외부위탁용역 (정책연구추진)	18,000,000원*1기관=	18,000
2	중등교육과	교원역량 성장지원	수업코칭비용	700,000원*30명=	21,000
3			코칭전문가연수	300,000원*30명*2회=	18,000
4		평가개선 장학지원	학생평가지원단운영	200,000원*120명*2회=	48,000
5			학생평가혁신심화연수	3,000,000원*14명=	42,000
6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추진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	10,000,000원*5과정=
7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			95,000,000원*2과정=	190,000
8	평화교육 역량강화지원		위탁사업비	15,000,000원*1식=	15,000
계					402,000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현황

청	자치구	계	초	중	고
동부 (22)	동대문	4	군자, 용두	경희	휘봉
	중랑	18	동원, 망우, 면남, 면동, 면목, 면북, 명중, 목현, 신목, 신현, 원목, 중흥	상봉, 신현, 장안, 중화, 태릉	신현
서부 (21)	은평	11	녹번, 대은, 북한산, 수리, 어울, 연천, 은빛, 은평	덕산, 연천	신도
	마포	4	신석, 하늘, 한서	성서	
	서대문	6	가재울, 북성, 흥연	신연, 연희, 인왕	
남부 (27)	구로	6	오정, 천왕	구로, 영림, 오남, 오류	
	금천	11	금나래, 금천, 독산, 문교, 문백, 백산, 시흥, 신흥, 탑동	한울	독산
	영등포	10	당산, 대방, 대영, 문래, 신대림, 영등포, 영림, 영문, 영신, 윤중		
북부 (15)	노원	10	노원, 덕암, 상원, 상천, 신계, 월계, 태랑	공릉, 수락	한국삼육
	도봉	5	도봉, 쌍문, 월천	북서울	효문
중부 (14)	용산	7	남정, 삼광, 서빙고, 용산, 한강, 한남	성심여자	
	종로	4	교동, 덕성	배화여자	배화여자
	중	3	남산, 덕수, 흥인		
강동 송파 (14)	강동	8	강명, 강술, 강일, 명원, 성일, 천일	강명	선사
	송파	6	거여, 송례, 아주, 위례별	송례	잠일
강서 (21)	강서	12	삼정, 송정, 신곡, 양천, 염경, 염동, 염창, 우장, 정곡	마곡, 삼정, 송정	
	양천	9	강서, 신은, 양동, 양명, 양화, 은정, 지향	양서	금옥여자
강남 (11)	강남	7	개원, 구룡, 대진, 도곡, 세명, 율현, 자곡		
	서초	4	우면	내곡, 서초, 수서	
동작 관악 (20)	관악	10	관악, 난곡, 남부, 미성, 사당, 삼성, 신봉, 원당	관악	인현
	동작	10	노랑진, 대림, 동작, 문창, 삼일, 상현, 신길, 영화, 행림	국사봉	
성동 광진 (22)	성동	12	경수, 금복, 금옥, 동명, 마장, 무학, 옥수, 행당, 행현	행당	금호, 도선
	광진	10	광장, 광진, 동의, 동자, 신자, 용고, 중광, 중마, 화양	용곡	
성북 (11)	강북	4	미양, 송중, 유현, 인수		삼각산
	성북	7	송례, 안암, 월곡, 장월	길음, 동구여자, 송곡	
계		199	146	39	14

2019 예산안 중 국외연수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2019	산출기초	사업별 설명자료	비고
지방공무원국외연수	함께하는테마연수	200,000	2,000×100명	189p	
	자기주도적기획연수	75,000	1,500×50명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	장기국외훈련	120,000	40,000×3명	192p	
안전인프라구축	「안전체험과 건립 지원」의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국외 현장방문	5,000	2,500×2명×1회	281p	
지방교육재정운영	지방교육재정 담당자 해외 선진 사례 탐방	12,900	4,300×3명	316p	위탁사업비
시의회협력	국외여비	12,000	4,000×3명×1회	380p	시의회 주관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학교예술교육활성화연수(국외)	10,000	10,000×1식	648p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 국제교류	80,000	4,000×20명	753p	
교육과정담당 교원연수(초)	국외교육과정실태조사연수(초)	4,000	4,000×1명	858p	교육부 주관
초등교원연수지원	「서울교육연구년제」의 위탁연수비(국외출장여비)	37,500	2,500×15명	866p	
교육과정담당 교원연수(중, 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의 고등학교교육과정담당전문직원 국외여비	4,000	4,000×1명	994p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의 중학교교육과정담당전문직원 국외여비	4,000	4,000×1명	994p	
중등교원연수지원	「서울교육연구년제」의 국외훈련여비	37,500	2,500×15명	1009p	
제2외국어교육활동지원	제2외국어교사국외연수	16,000	750×20명 50×20명	1096p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특성화고국제화지원」의 북방초청국가 방문 국외출장비	14,000	3,500×4명	1671p	
전국체육대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유공교원 국외연수비	60,000	3,000×20명	1711p	
학생배치계획담당자연수	시도교육청학생배치업무 담당자연수참가경비	6,000	2,000×3명	1918p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운영지도	사학기관 국외 현장연수 실시	40,000	2,000×20명	1939p	
	건축공간정책 해외혁신 공간디자인현장연수	12,000	4,000×3명	2266p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적정규모학교육성해외연수	2,000	2,000×1명×1회	2274p	
교육연구개발지원	「국내외학술교류」의 국외여비	50,000	2,500×10명×2회	2323p	
연수기획평가및원격연수	전국연수원발전협의회회의 국외출장여비	5,000	5,000×1회	2382p	전국연수원 발전협의회 협의
계		806,900			